

제362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7월25일(수)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업무보고
 - 가. 고용노동부
 - 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다. 중앙노동위원회
 - 라. 최저임금위원회

상정된 안건

- | | |
|----------------------------|---|
| 1. 간사 선임의 건 | 5 |
| o 간사(한정애·임이자·김동철) 인사 | 5 |
| 2. 업무보고 | 6 |
| 가. 고용노동부 | |
| 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
| 다. 중앙노동위원회 | |
| 라. 최저임금위원회 | |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으로 일하게 된 존경하는 여덟 분의 위원님 그리고 새롭게 선임되신 일곱 분의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국회 내 어느 상임위보다 다양한 사회 간, 세대 간, 계

층 간, 지역 간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경제와 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반기에 수많은 논의와 진통 끝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등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해 왔습니다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그리고 청년실업 및 고용안정 방안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 조속히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등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성장동력이 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사드 보복과 환율 하락, 글로벌 무역전쟁 등의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노사정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당초의 좋은 취지와 다르게 안 그래도 힘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한계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선 이상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구성 문제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 적용 문제 등에 있어 치우침이 없이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법안 처리율이 22%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과 같은 대형 이슈에 묻혀서 상대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후반기에는 쟁점과 비쟁점 법안을 가능한 구분해서 민생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 나가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회기와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노동 분야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만큼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나 보고에만 치우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 방식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제 때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행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서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게 됩니다. 오랜 불경기와 씨름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밑바닥에서부터 견인해 온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기존의 정책만을 고수하는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본을 지키면서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신뢰를 쌓아 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모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과 정부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볼 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한정에 위원님 먼저 인사를 해 주시고 다음 자리를 옮겨서 임이자 위원님 계시는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정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 모시고 하반기 환노위가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선 때 위원장님으로 모셨던 설훈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훈 위원 임이자 위원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학용 아니요, 쪽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설훈 위원 그렇게 해요?

고맙습니다.

위원장께서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따라서 공부를 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회 선배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노동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함께해야 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서 소위 말하는 협치가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송옥주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전반기에도 환노위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도 환노위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김학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우려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할까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환노위는 처음인데요. 여러 선배 위원님들, 특히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가르침으로 위원회를 잘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반기에는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우리 사회의 소득의 양극화 또 일자리 부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수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봐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명을 가지고 환노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필수불가결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용득 위원** 김학용 신임 위원장님 이하 하반기 환노위에 배정되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노위는 노사 간의 갈등 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다 보면 충돌도 피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상임위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임위를 환노위로 배정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감사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하반기에는 상호 정쟁을 피하고 협치와 합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는 그런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는 데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전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또 선후배 위원님들 모시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김영주 장관님과 이성기 차관님을 비롯해서 고용부의 많은 공무원분들, 첫 인사를 올립니다.

고용과 노동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직결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노위에서 결정되는 많은 안전들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좌우되는 매우 중차대한 위원회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는 자세로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들과 함께 또 존경하는 선후배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위원입니다.

상반기 때도 간사를 했고 지금 하반기 때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상반기 때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님을 모시고 해서 그 나름대로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하반기에 우리 당 소속 위원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다른 부담감도 살짝 생기고 또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유연성도 갖춰야 되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우리 환노위는 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대립,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임위가 우리 환노위입니다.

상반기 때 근로시간 단축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인 사용자 측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의 소리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했을 때에는 근로자들로부터 또 엄청난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임위가 환노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 간에도 서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잘 모셔서 유연성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이번에 새로 환노위로 오게 된 자유한국당 비례 국회의원이자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입니다.

환경과 노동 문제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절규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회가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진국 위원입니다.

비례를 맡으면서 강서갑을 맡은 문진국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환노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용득 위원님과 임이자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하여튼 그 법안이…… 우리가 아까 김학용 위원장님께서 이십여 퍼센트밖에 못 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서로 맞대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청년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이어서 후반기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도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으로서 많은 젊은 세대가 출산과 양육을 생애주기에서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젊은 부모들이 겪는 일·가정 양립 문제도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환경에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여러 정책과 입법이 이 환노위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또 미세먼지 등의 이슈도 영유아, 취약계층에게 정말 중요한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또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의 가장 큰 어젠다가 있는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함께 2년여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 중에 국가적인 환경문제인 미세먼지 문제 또 국토 개발과 환경문제가 충돌하는 문제 또 최근에 있었던 사용자와 근로자의 어떤 충돌 문제 이런 갈등 요소가 가장 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과연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타협점은 어디가 가장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으로 가장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대 국회 들어서 저와 함께 2년은 국방위에서 또 2년은 환노위에서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된 김동철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다선의원으로 있었지만 환노위에는 처음 보임이 됐습니다. 서민들, 우리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환노위는 반드시 한 번은 거쳐 가야 될 상임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노동개혁만은 저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그리고 해고의 남용을 철저히 통제하는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 노동개혁만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앞에서 이제 산업구조조정까지 우리가 제대로 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우리의 노동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환노위에서 일하게 된 이상돈입니다.

전반기에 관심 가졌던 일 이런 것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환노위는 보다 많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환노위가 아주 의미 있고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입법활동을 보좌해 줄 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동 분야와 총괄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줄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를 지원해 줄 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입법활동을 실무 지원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승우 행정실장입니다.

이세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유순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정용 입법조사관입니다.

안병갑 입법조사관입니다.

이규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유민호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지희 입법조사관입니다.

노재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순이 주무관입니다.

채정현 주무관입니다.

박주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23분)

○위원장 김학용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위원님, 자유한국당에서는 임이자 위원님,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동철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한정애·임이자·김동철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한정애·임이자·김동철) 인사

○위원장 김학용 그러면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임이자 간사님은 이미 간사가 될 것으로 확정을 짓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정애 위원님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전반기 환노위를 하면서도 느꼈습니다만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번에 간사직을 수행하게 된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 잘 모시고, 지금까지 저희 환노위가 굉장히 서로 간에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가면서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아니하고 진정한 협치를 보여 주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사를 맡게 되신 김동철 위원님과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그리고 제가 말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임이자 간사님 한 말씀 하셔야지요. 임이자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김학용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들 잘 섬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김동철 간사님, 비대위원장 하라 간사 하라 너무 바쁘십니다.

○김동철 위원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환노위 분위기가 오늘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장님, 한정에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 잘 모시고 오늘과 같은 환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고맙습니다.

우리 간사 위원님들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

가. 고용노동부

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 중앙노동위원회

라. 최저임금위원회

(10시25분)

○위원장 김학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고용노동부를 포함하여 4개 기관입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고용노동부 산하 모든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간사님들께서 휴가철도 겹치고 그래서 8월 달 결산 심사 시 실시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 우리 간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오늘 회의에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장을 모두 배석토록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산하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방식은 4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다음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대 후반기 첫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고용노동정책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노력을 이어받아 후속대책 등 관련 정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한 고용노동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안착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개정되어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6개월의 계도기간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 전년도 대비 10.9%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최저임

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안전 문제 역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빈발하던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난 11월 예방대책 발표와 집중적인 점검 등을 통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마련하고 ILO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과 미조직·취약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한 간호사를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직장 내 갑질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감독과 익명신고 창구 운영, 지방관서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도 근절시키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이 민간에도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일자리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7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의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과 함께 개편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되어 청년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벌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신설, 특화훈련 확대 등 신중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에 대비하여 특고·예술인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자 훈련,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신기술·유망분야 위주로 지속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고용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올바르게 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 그리고 따끔한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입니다.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입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윤현덕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송문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재홍 한국고용정보원장입니다.
 이석행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입니다.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입니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입니다.
 노경란 한국잡월드 이사장입니다.

(기관장 인사)

다음은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기 차관입니다.
 박화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안경덕 노동정책실장입니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입니다.
 김영국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입니다.
 이현수 대변인입니다.
 박준호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지방고용노동청장입니다.
 정형우 중부고용노동청장입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입니다.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입니다.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입니다.
 현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공석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기획조정실장
 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주요 정책 위주로다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그렇게 하겠
 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현황은 생략하고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현황 부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1948년도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발
 해서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서 2010년 7월에 고
 용노동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종사
 하는 인원은 9700여 명 됩니다, 공무원하고 민간
 근로자 포함해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인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 기타 공공기관 포
 함해서 11개 기관에 1만 4000여 명 정도가 근무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생략하고 6페이지에, 예산 규모는 금
 년도의 경우에 총 23조 8000억 규모입니다. 그중
 에 일반회계 예산이 5조 9900억 규모이고, 5개
 기금이 17조 원 정도가 됩니다. 5개 기금 중에서
 고용보험기금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10조 9000억
 규모이고 산재보험이 5조 9000억 규모입니다.

주로 저희들 예산의 대부분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그다음에 산재 보상 등 사회안전망 부
 분,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 노동시장 정책에 투
 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 전체 일자리 예산은 19조 원 규모
 입니다. 그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부 예산
 이 13조 원 규모로서 약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저희들 소관 법률은 약 40여
 건 됩니다.

고용정책실 산하에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
 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률이 있고 노동정책
 실에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 설명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 여건으로서의 현재 상반기 고용노동
 동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의 고용률 자체로는 66.5%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상용직 그리고 피용인,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자만 볼 때 전년에 비해서 14만 명 정도가 상반기 중에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의 실적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된 요인으로서 제조업 부분의 조선업이나 자동차 등의 구조조정 또 부진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지표상으로는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고용률 42.3%, 실업률 10.1%. 그러나 체감상의 지표와는 차이가 있고 더더군다나 향후 3~4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유입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일자리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청년, 지난번 5월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 그다음에 고령자 등에 맞춤형 취업지원 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복원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로 현재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현장의 경우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과 맞물려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는 5월 기준으로 사고 사망자가 400여명 수준으로서 전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발표한 타워크레인 대책, 사망사고 감소대책 이후 건설업 부분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는 제조·서비스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의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현장 안착 그다음에 직장 내 갑질, 성차별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효율화와 함께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등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직

업훈련 체제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안은 저희들이 지원 대책을 1차 발표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계도 중심의 지도 감독을 실시하기로 발표를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주요 현안 35페이지 보고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마는 이 부분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상담, 시정 지도하고 있고 그 외에 지도, 점검, 감독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서 자율 점검도 추진하고 최저임금이 준수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해 주셨고 그다음에 7월 14일 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안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 결정된 바 있고 현재 이의제기 기간 중입니다. 8월 3일까지 결정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안착과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서 저희 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3조 원 정도 예산을 마련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7월 20일 현재 222만 명,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원의 94% 정도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뒤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산업재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사망자를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 1만 명당 0.27명 수준으로, 그래서 사망자를 500명 이하로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일단은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을 현재 정부안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법제 심사 중이고 하반기에 국회 제출해서 심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하청 사망자가 사망자의 절반 정도,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취약 시기, 취약 유형, 그러니까 건설업의 추락 재

해라든지 저희가 타깃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현장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캠페인 등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 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히 취약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작업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이부분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청소·요식업, 판매업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들을 규정한 산안법 개정이 완료가 돼 가지고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위법령 마련 등 법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제도는 올해 초부터 출퇴근재해가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꾸준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산재보험에 있어서 과로 인정기준, 지난해에 지적해 주셨던 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하는 등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도 마련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노동존중사회와 관련해서 노동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먼저 ILO 핵심협약이 차별금지 협약, 아동노동 금지 협약 외에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협약이 있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협약에 대해서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여기에 상충되는 국내법, 핵심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그 외에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 미조직·취약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특고 노동권 등을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현재 전문가안을 마련하고 추후 노사정 사회 대화의 의제로 선정이 되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확대하고 부당노동 행위는 노사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 혁신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노동법에 대한 청소년 내지 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18일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노위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마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정의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용자의 예방 교육이나 조사·조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관련 문제가 된 분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 병원 업종의 '태움' 같은 관행인데요. 노사정 TF를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과 관련해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몇 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도의 골격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 사실관계의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피해자의 보호 등입니다마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저희들과 관련된 내용은 익명신고장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행정지도 내지 감독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분야에 대한 감독을 시행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문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들의 33% 정도가 됩니다. 600여 만 명이 넘는다고요. 전체적인 규모가 외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를 전반적으로 감축을 하고 상시·지속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들이 나눴는데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는 1단계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까지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단계로 13만 명 정도가 전환 결정이 됐고

그중에 절반 정도, 7만 명 정도가 실제 전환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정규직 채용 원칙과 관련해서는 상시·지속 업무 등, 지속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그리고 일시적 업무 증가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게 비정규직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도상으로는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권리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이나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칭해서 ‘특고’라 부르는데 여러 가지 용어로 씁니다,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어떤 특정기업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법이 그동안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개별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동기본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파견 문제인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도급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원청 기업에서 직접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파견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파견으로 판단이 되는데 파견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원·하청 기업 전반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1월 31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고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내용은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참여 주체가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4개 의제별 위원회 구성 논의 중이고, 저희들은 미조직 취약노동자 대변 단체와 정기적 소통 채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련 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전체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관계부처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일자리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조선, 자동차 등 구조조정이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장려금 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높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년 고용 상황은 저희들 청년 고용이 외국에 비해서 고용률 자체가 낮았는데 그 원인으로 대졸자, 대학 진학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노동시장의 격차로 인해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매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년일자리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청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추가고용장려금, 중기에 취업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경 이후 6월부터 본격 추진 중인데요, 추가 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종전의 10배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참여 기업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도 이미 4월 달에 올해 편성된 본예산에 해당하는 인원들이—5만 명이지요—신청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6만 명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청년센터, 구직활동지원금이 추경 사업으로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대책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올해 연말에 만료됩니다, 한시법으로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국회에 기간 연장하고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저출산·고령화 대비 여성 대책입니다.

먼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관련해서, 차별 없는 일자리 구축을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의 모든 조항을 전 사업장, 5인 미만까지 내년 초부터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련한 임신·출산 단계별 지원대책의 골격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촉진을 위한 급여 그다음에

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급여도 인정하고, 육아휴직에서 특히 중요한 게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상한을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요지에 거점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올해 3개소 설치를 추진 중이고 내년도에는 한 10개소 이상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자료가 있고요.

26페이지, '신중년' 용어는 저희들이 실제 기업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50세부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한 70세 정도까지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표로 먼저 하는 게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60세 정년제가 전 사업장에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 효과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된 일자리 퇴직을 앞둔 분들이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설계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에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상담·훈련·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 내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훈련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해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퇴직자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은 지난번 발표한 5차 장애인고용 기본계획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부과하고 그렇게 이행토록 촉구하고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고용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이라는 제한 없이 고용의무를 적용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편을 위해 현재 TF 운

영 중이고,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퇴근 비용 등 직접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건설업 노동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퇴직공제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기능향상훈련이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층이 건설노동시장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서 첫째, 일자리 안전망 강화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분들도 실직이나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에 실업급여가 종전 급여의 50%, 3개월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각 60%, 4개월에서 9개월까지로 이렇게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실업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위해서 실업부조제도 도입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은 저희들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 외에 취업 지원이 고용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취업성공패키지제도라고 저희들이 구직자에 대해서 상담을 제공하고 훈련을 거쳐서 취업을 활성화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강효상 위원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시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주요 현안 위주로 하세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예, 그러면 거의 다 왔는데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인력 양성하고 있다는 말씀만……

노동시간 단축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과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이후

에 저희가 5월 달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수차례 업종별 간담회를 거치고 올해 7월 시행하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법 개정 설명자료, 근로시간 판단기준,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등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발표한 대로 올 하반기에는 사업장 지도 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해서 시정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사회적인 사고나 사이버 위기 등 긴급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특별연장근로하는 부분 저희들이 인가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요구가 있는데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를 가지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채용 인건비나 임금 저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노사를 위해서 재정지원 방안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기업이나 근로자가 함께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생활 균형, '워라벨'을 주제로 해서 전반적인 캠페인 내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38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번 7월 14일 날 8350원, 전년 대비해서 10.9% 인상된 방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말미에 보시면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내주 중에 결정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나 간담회, 설명회 등과 함께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안정지원 대책은 19년도에도 기본적으로 계속한다는 방침하에서 3조 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부대의견 주신 대로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세제 등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이후로 혹시 저소득·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산입범위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산입범위의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다소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3개 위원회 위원장님들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또 간부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이 계시는데 국제회의 사회를 보셔 가지고 못 오셨고 시민석 운영국장 오셨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위원장 인사말 따로 있고 실무국장 운영계획 따로 있는데 제가 같이 묶어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그렇게 하시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난달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난맥상을 보였던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하라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점에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 사업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제들이, 이미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저임금, 노동시장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라든지 사회안전망, 고용안정 등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얼마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잘할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지난번에 노사정 모두 모여 가지고 합의를 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은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될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민주노총이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두 차례 만났고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만나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과제를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볼 때 아까 그런 과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노총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참여해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립하는 것 아니냐,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논의들,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등 산업안전 문제, 사회안전망 문제 그리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이런 문제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 내에서도 노사 간 의견이 수렴되고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의제별 위원회를 만들겠고.

지금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산업 업종별로 의제들과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업종별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업종별 조건에 맞는 사회적 대화가 되도록 하겠다…… 특히 지금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현재 사회적 대화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분들을 꼭 참여시켜서 소외된 계층이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제자리를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고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충실한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그리고 간부 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장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준성입니다.

먼저 인사말씀드리고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동위원회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 시정, 복수노조 관련 심판업무와 송무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판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의 경우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첨예한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정성립률이 50% 수준입니다만 현장방문 및 사전·사후 조정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181개 사업장에서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그리고 차별 시정 심판 사건 역시 사건 내용이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처리 매뉴얼과 판정·판례 분석을 체계화하고 조사관의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쟁점별 판단요소 중심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알기 쉬운 판정문 바로 쓰기를 시작하여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예년보다 많은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심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전년 동기에 비해 약 2일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

은 작년보다 6% 정도 감소하였고 행정소송에서 중노위 재심판정이 유지되는 비율도 87%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판사건의 95% 이상이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되었으며 행정소송에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취소되는 비율도 처리 사건의 1% 미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과 노사 당사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동위원회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회에 저희들 상임위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과제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주요과제 추진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중앙노동위원장 박준성 예.

○위원장 김학용 12페이지.

○중앙노동위원장 박준성 12페이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앞의 총괄 개요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예.

○중앙노동위원장 박준성 총괄 개요가 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되어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쟁의 조정, 필수유지업무 결정, 복수노조 관련 결정 및 심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심판, 비정규직 차별시정 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정원은 노·사·공익위원 현재 1805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16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노·사·공익위원들의 7개 부문별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364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338억이고 기본경비가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이하 추진실적 및 평가는 간략하게 생략하고 12페이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과제 다섯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서비스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연간 약 800여 건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조정전치제도에 이어서 조정을 거친 후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는 게 우리 현 법체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율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2개 사업 지역으로 중첩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성립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노사분규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사업장 특히 병원, 금속, 공공기관의 노사분규가 현재 늘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사업장을 중점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준상근 조정위원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조정 전 지원, 본조정, 사후조정 등이 입체적으로 되도록 조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정 위원님들이 비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중노위 위원장님까지 직접 현재 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페이지, 부당노동행위나 복수노조 사건과 같은 집단분쟁사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 사건 처리 과정이 사실 법적으로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그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분쟁의 배경이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단분쟁사건의 조사 과정이 매우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관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 훈

련은 물론이고 이런 사건을 처리했던 나라의 조사관들의 조사기법이나 직권조사 관련 내용들을 저희들이 상시적인 교육 훈련 체계로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짧은 시간 내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이 분쟁의 처리 과정을 거쳐 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공유라든가 조사에 대한 신뢰성 등과 관련해서 노사가 매우 짧은 시간에 사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14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건 접수부터 처리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문자나 관련 전자시스템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예산적인 지원이 있어야 좀 더 질적인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간 처리 사건이 1만 4000건인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심판사건입니다. 부당해고, 차별시정과 관련된 심판 사건이 연간 1만 2000여 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사건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사건 처리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기 우리 위원님 중에 법조분야 분도 계십니다마는 법원의 경우 판정서는 판사님들이 씁니다. 쓰는데 저희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은 심판했던 위원님들이 판정 요지를 작성해 주시면 그 판정 요지를 중심으로 조사관이 판정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심판·심문을 하고 판정 요지를 써 주시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노동위원회가 과거에 법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 왔던 미괄식 또 복문 형태의 나열식 판정문을 두괄식, 단문 중심의 판정문으로 고쳐서 이해당사자들이 판단 근거나 판단 요소 또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결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판정서 바로 쓰기를 그동안 몇 년간 준비를 해 온 결과 금년부터 지노위, 중노위가 알기 쉬운 판정서 바로 쓰기를 기준으로 새로운 판정서를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차별시정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 사건은 연간 한 150여 건의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사건 처리의 유형별 조사 내용과 판정 내용이 법원 등 관계기관에 많이 원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제도 활용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고용상 성차별 관련 제도 시행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차별 관련 내용의 영역 확대에 대비해서 저희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업무는 연간 한 600여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소속 변호사와 또 공익법무관의 지원과 더불어서 우리 조사관들이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노동위원회의 활동이 나뉘도록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신뢰성이 높아야 됩니다. 금년의 경우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우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위원 재위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위촉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 또 공정성을 갖춘 위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사관 교육의 내실화는 물론이고, 특히 매 3년마다 저희들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위원회의 실행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내부 운영규칙 개정에도 노력을 하고 관련된 노사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상 간략한 추진과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간략하진 않지만 내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장 류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대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3월 30일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아 열두 번의 전원회의를 포함해서 총 십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7월 14일 새벽 4시 40분경에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노측 제시안과 공익위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서 공익위원안인 시급 8350원을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결정은 어려웠지만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입법과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논란 등으로 노사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한 진통과 난항을 겪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여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종 의결 과정에 경영계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노동계 위원이 불참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노·사·공익 간 신뢰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자료 3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원이 10명입니다. 공무원 10명이 있고요. 예산은 1년 예산이 4억 4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 보시면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관련 된 보고서 그다음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

실태 분석 그리고 적용 효과에 대한 실태 분석 그리고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기초자료를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후에 올해의 경우 제6차 전원회의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 방문 기간 중에 노동계가 불참함으로써 노사위원 없이 공익위원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방문 직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공유를 하고 이후 전원회의에서 차질 없도록 진행한 바 있습니다.

셋째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올 3월 30일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 제4차 전원회의, 11대 위원 위촉이 시작되고는 실질적인 제1차 전원회의입니다. 5월 17일에 있었고요.

5월 24일, 28일에 걸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된 이후에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게 됩니다.

5월 30일에 공익위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저임금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노동계 복귀를 촉구하고 최임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월 31일에서 6월 15일 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 인천, 익산 등의 사업장 방문 그리고 노·사·근로감독관 집담회와 같은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6월 19일 그리고 6월 22일에 제5차와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논의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을 준수하겠다는 것 그리고 노동계의 조속한 복귀, 경영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논의 등과 관련해서 근로자위원 전원 불참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법정 심의 마감일을 지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월 3일에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복귀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에 대해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22명이 출석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7월 4일 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안을 제출하고 설명했고 그리고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에 관한 최저임금 효과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7월 5일에 제11차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노사가 최초로 제시안을 내게 됩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시급 1만 790원,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시급 7530원, 2018년 대비 동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0차 전원회의에서 상의되었던 사업별 구분 적용안 그리고 산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추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에 제12차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설명이 추가로 있고 그 직후에 표결했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해서 14명이 반대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7월 11일에 제13차 전원회의가 개최됐습니다마는 사용자위원들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항의해서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13일에 근로자위원들이 최종 수정안 시급 8680원 안을 제시했고요. 여기에서 역시 사용자위원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는 개최됐습니다마는 사용자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논의를 했고 계속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제15차 전원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13일 밤 22시경에 사용자위원들에게서 공식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최종 통보입니다. 그전까지 계속 참여를 독려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사용자 간사로부터 그날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참여가 어렵다, 의결을 해도 좋다 이런 상황의 최종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공익위원 그리고 노동계위원이 상의한 결과 원래 국민에게 약속한 7월 14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익위원은 시급 8350원, 전년 대비 10.9% 인상안과 근로자위원안 시급 8680원, 전년 대비 15.3%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서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투표한 결과 공익위원안에 대해서

8표, 근로자위원안에 대해서 6표로 최종 공익위원안이 가결됐습니다.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산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소득분배개선분 그리고 협상배려분 이런 산식을 통해서 10.9% 인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 7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 편의를 위해서 발언대를 2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답변하시는 위원님들 반대쪽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예, 그러시지요.

○이장우 위원 최근 한 6개월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장관님이 혹시 간담회 가지신 일이 있으시면 건의사항하고 처리 결과 또 회의록 있으시면 회의록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을 국적별·업종별·지역별, 임금수준 이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순서는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각 당 위원님들 교대로 하면서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먼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환노위에 처음 와서 이렇게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 여

쫓겠습니다.

저는 어제 평소 존경했던 노회찬 의원님의 빈소에 다녀와서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서는 저보다도 오래 정치생활을 하셨지요? 3선 의원님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정치라는 것도 결국 서로 잘되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잘살자고 하는 것이 정치인데 우리나라의 정치가 서로 편을 갈라서 갈등하고 어떤 공멸을 부추기는 이런 정치문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이 참 불행한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장관님,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효상 위원** 선진국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까? 많은 언론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노회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정치체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규제, 제도적인 허점, 미비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많이 있고 과도한 처벌 이런 것이 우리 정치문화를 갈등과 서로 공멸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 노동법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최저임금법 28조1항을 보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또 편의점가맹업체인협회에서 회원들이 ‘이번에 최저임금 지키지 않겠다. 차라리 불복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강효상 위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만 해도 700만이고 편의점협회 회원이 3만 명입니다. 지금이 사람들 다 범법자로 모시겠다는 겁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복하면 다 처벌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에서 오죽하면 최저임금에 대해 과도하다, 범법자가 되더라도 못 지키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분 이해를 합니다.

○**강효상 위원** 이뿐만 아닙니다. 주 52시간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글의, 시장의 그런 폐해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이 또 정부가 최소한의 어떤 저소득층 또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는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정신은 지켜야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어요. 선진국에도 최저임금을 어겼을 경우에 대부분 벌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주 근로시간의 제한 이런 강제규정조차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도하게 처벌조항을 뒤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것 고칠 생각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OECD 국가 중에서 소득격차가 가장 높습니다.

○**강효상 위원** 우리 97년 외환위기 때 OECD 규정 지키려고 우리가 금융개방했다가 외환위기 당한 역사적인 교훈이 있어요. OECD가 좋은 선진국 제도의 모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모든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모든 해법을 주고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특히 OECD 핑계를 대십니까?

장관님, 지금 경질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언론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지금 정부 내에서조차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 최저임금제에 관련해서 이런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 때문에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국민께 참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하셨고요. 같은 당의 원내대표께서 장관님께 정말 심한 얘기를 하셨어요.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노동부장관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참 듣기 거북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같은 정당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예 내놓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말씀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대통령을 비롯한 부총리,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경제상황, 우리 주무부처의 소관인 최저임금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난리거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위원님 말씀 경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공약하신 최저임금 1만 원을 못 지키게 된 것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우리 최저임금노동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공약은 지키되 2020년까지 못 지킨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OECD 기준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OECD 국가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지표나 통계를 보면 그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행복지수는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소득격차는 저임금노동자들이 23%가 넘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불행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노동존중사회를 만든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는 날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저는 업무를 다할 거고,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소상공인 부분들의 어려움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정무위 활동할 때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문제, 본사의 갑질 문제, 원청의 문제 다 알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위원장 김학용** 강효상 위원님, 아쉽지만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강효상 위원님 말씀을 듣자 하나씩 그것인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소득격차가 수치상으로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벌어지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도의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것은 개인 사정인데 봐 드리다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시간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7분 이내에서 좀 해주시고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이렇게 마주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동안 노고도 많으셨고요. 특히 최근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도 심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이고 또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장관께서도 금방 답변을 하셨지만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IMF 때보다도 더 가계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소비 비율이 IMF 직후에 48%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46%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비절벽 내지는 내수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자면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득격차라든가 그다음에 또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이 과연 지난 1년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소비를 늘려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노동부에서 오히려 이것을 노사간의 갈등, 사회갈등으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또는 노동 소득분배의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의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

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과제다, 이것은 노사가 입장이 달라서 갈등을 벌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 노사가 손잡고 함께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장관께서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 우리 일반 국민 모든 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자리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국민들 또 특히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자리 인상을 한 근거를 아까는 소득분배 개선 또 협상배려,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치를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용자측에서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으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그리고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유사근로자 임금인상의 경우에는 올해 임금인상 예측치 이 부분을 거의 예외 없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3.8%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반영된 것이 소득분배율입니다. 분배율 부분은 2%, 2.5% 이렇게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번에는 논의 결과 공익위원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대단히 불균등하고 그리고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소득분배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점점으로 잡은 것이 4.9%고요.

그리고 협상배려는 기본적으로 거의 매년 필요한데 최근에는 많이 반영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기준이 없이 결정됐습니다마는 그 전에 보면 협상배려분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하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식으로, 산식으로 나오는 수치가 있고 협상을 하다 보면 그 수치가 그대로 결정되기

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협상배려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협상배려분이 늘어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윤호중 위원 다른 사안이예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협상배려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과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잔차,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 그리고 이번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산입범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노동계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7.8%를 기초로 올리자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것을 논의하자,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고 ‘정확하게 수치를 뽑아 달라’ 저희들 사무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p의 평균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부결되면서 사용자 측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총이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경총의 이의 제기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이전에도 경총이라든지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에서 이의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는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판단하기 좀 어렵고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호중 위원 최저임금위원회는 별도의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지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정되는 과정이라든지 결정되는 근거를 다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추가 자료라

든지 요청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윤호중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고용부장관께 연 관돼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죄송하지만 제가 강효상 위원 님에게도 거절을 했기 때문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설훈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최저 임금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 단축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조금 전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도 받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근로 기준법 개정은 다름 아닌 우리 국회가, 환노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개정 한 법률이 시행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결과해 지라고 우리 환노위가 이 문제를 또다시 다뤄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일단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환 노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국회에서도 몇몇의 반 대·기권표가 나왔지만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노위가 행정 부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부 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여론을 참조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다시 한번 재론하든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저는 최저임금 문제를 볼 때 국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환노위 일원으로서 굉장히 무력감 같은 것을 많 이 느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까마는 미국은 한 동안 최저임금 별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최저 임금은 최저니까 시장에서의 임금이 경제가 좋아 서 올라가면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지 않습니 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불행하게 경제상황이 안 좋은 탓인지 시장에서의 임금이 사실상 최저임금 보다 더 올라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기대치 또 경제상황의 변 화 등등 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모든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은 좋지만 저는 최저임금위원 회가…… 이게 또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 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다 계산을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한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국회가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결국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딱 맡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지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저희들이 법과 제도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독립규제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라고 해도 위원을 갖다가 통제하 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이상돈 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라는 것을 갖 다가 정부에서의 사업이라 그래서 입법·행정· 사법도 아니고 사실상 독립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겠 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구한테도 책임을 지지 않는 위원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저희들은 최저임금위 원회 설립 목적이라든지 제도의 도입 목적에 상 당히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돈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갖다가 묻는 건 아니고, 위원회라는 게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 까? 장관이 결정한 정책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는 곳, 임명권자나 국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회 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잘못된 정책을 하면 국 회의원 개개인은 선거에 책임을 지지만 독립규제 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 문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사실상 아무한테도 책 임을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 동의하지 않으세요? 제 말을 이해하시지 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이해하고 있습니 다.

○**이상돈 위원** 국회라는 것은 대의기관 아닙니 까?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특히 최저임

금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이것 사실 국회가 만든 법이니까 할 말은 없어요. 거의 국회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가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그것이 너무 많다, 급격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국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만 따로 떼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시켰으면 그것 통과됐을까요? 본 위원은 그것은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다만 저것이 전체 예산이니까, 전체 예산을 저것 때문에 부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과된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위원회의 결정, 그것도 한쪽 측에서는 다 보이듯한,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국회가 저렇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갖다가 국회가 또 만들었어요. 또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냥……

국회가 이른바 사실상 민의의 대변이라는 대의 기관이 제대로 된 토론이랄까 실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으로서, 특히 환노위 위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다음 번 놀러 보시지요.

그러면 외국은 다 그런가 보면요 미국은 이게 정식 법률입니다. 브라질, 캐나다 등 몇 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회가 이렇게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것도 결국에는 행정부가 답할 것은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 스스로 환노위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미국, 브라질, 캐나다, 일부 국가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노·사·공 3자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갈등이 오히려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위원님들 열한 분이 최저임금위원회 여기에 대한 개정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환노위에서 심의할 때 저희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정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임위 TF팀에서 작년에 계속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사·공익 3자 사회적 대화 기구가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ILO 협약과 관련된 그리고 논의와 관련된 부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공익을 정부로 할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정되는 대로, 논의를 통해서 법과 제도가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충실히 따를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설훈 위원입니다.

사회가 민주화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일점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등을 들여다보면 대화가 된다면 그 갈등은 해결점이 나오고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제대로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한다면 결국은 합리적 처방으로 해결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 민주사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결정 자체가 합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경제상황을 놓고 보면 오늘의 이 장기 불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법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방이 있겠지만 대체로 수요 부족 현상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법으로서 소득주도성장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이게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주머니에 돈이 적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물건을 살 수 없는 만큼 불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야 된다, 소득을 높여서 물건을 더 사게 하고 물건을 더 삼으로써 공장이 더 돌아가고 그리고 또 세금도 내게 되고 선순환구조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소득주도성장론의 간단한 논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더 올려주는 것이 한국 경제 전체를 볼 때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판단은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 판단, 한국 경제를 살려 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급료를 더 주게 하는 이 판단이 어느 수준이 맞느냐, 어느 점에서 타협점이 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장치에 있는데 불행히도 지금 한국 노동운동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에서 민주노총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다시 들어올 때 한국 경제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돼야 되고 이 대화의 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충분한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기본적인 논의가 된다면 나머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합의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 쪽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열쇠의 첫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성현 위원장께서 민주노총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위원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선 묻겠습니다.

우선 문성현 위원장께서는 민주노총과 언제쯤 대화를, 가장 최근에 대화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가장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사항들을 가정해서 보면 노사가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에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노사가 자기 책임을 해야만 수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길은 일단 대화에 들어오는 길이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논의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설훈 위원 가장 최근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날짜를 한번 적시해 보십시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민주노총 위원장과는……

장관님하고 했던 그날이 언제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날짜 확인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7월 6일 날 만났습니다.

○설훈 위원 7월 초순에 만났네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먼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결국 대화로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쪽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합일점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뿐만 아니고 경총이라든지 사용자측 하고도 만나서 풀어 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왜 이게 타협이 안 되느냐,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는 토론의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를 하면…… 지난 번에는 시간에 쫓겨 가지고 대화가 부실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수치적인 문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게 되면 다 털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있는 자료를 다 놓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냐, 결국은 그 합일점을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적군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적군들이 아닙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한국 경제를 더 살려 내기 위한 처방으로써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쪽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하고 다시 또 경총이고 사용자 측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 틀에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훨씬 더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회에 들어오게 하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노동부장관과 문성현 위원장이 첫째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언론에 고지를 하고 ‘우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관심과 국민적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쪽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에 안 들어오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 기대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쪽에서 위원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논의 틀 속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절반의 성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도 이 논리는 통할 것이고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내는 데도, 일으켜 세우는 데도 이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 경제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과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처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현안 문제들, 민주노총이 볼 때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현안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쌍용자동차 문제라든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전교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전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과 연동해서 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것조차도 사회적 대화에 들어와서 풀자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그러면 먼저 들어와서 정부 정책에 따랐던 사람은 역차별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도 없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전 질의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까 많은 보고 싶은 얼굴들이 안 보여 가지고 어쨌든 그런데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가치 회복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최저임금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노동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정이 보장되고 노동자의 삶이 행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 20대 후반기에도 환노위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언론을 보면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데도 고용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지표들도 저희가 여러 군데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18년도 상반기의 고용률이 66.5%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한 부분을 보니까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상용직이라든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질이 좀 높은,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다 그런 지표도 있고요.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4만 2000명이 증가해서 3개월째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파악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고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상반된 부분들을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어떤 견해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증가폭은 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폭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14세에서부터 64세의 감소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하고, 1/4분기에 자동차하고 조선업종에만 한 8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주원인이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켰다, 노동연구원 및 KDI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이 고용 감소에 대해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지나야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나 보도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짚어 볼까 하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90%가 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급률은 28%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목표의 94.1%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돈을 지급한 노동자는 67%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3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을 지금 심사하면 1월 달부터 5월 달 것까지 한꺼번에 다섯 달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누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이나 11월 달 되면 많이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까 심사하는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심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보완기간도 오래 걸려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린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정수급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여러 가지 현장점검이나 그런 게 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일자리안정자금은 작년에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16.4%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시는 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누수를 방지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행정 DB를 하고 있으나 60만 개소가 넘습니다. 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영세사업장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늦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집행이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올 초보다 지금 많이 진도가 나간 부분인 거고요.

또 이런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도 내년에 올 해에 준해서 시행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예결특위를 할 때에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된 예산의 범주가 3조 원으로 편성됐는데 그게 타당하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안정자금 이외에 EITC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

나 그런 의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 원으로 편성하는 게 적절한 건지, 지금의 추진 과정이나 속도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그 부분에 답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EITC도 크게 확대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EITC가 늘었으니까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이나 그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직접일자리안정자금은 3조 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루누리사업이나 여러 가지 EITC 이런 부분까지 하면 5조 원의 예산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을 해 주시면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예산은 3조 원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올해 10.9% 인상을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가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EITC를 하면 일자리안정자금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EITC를 하게 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급여 보전 차원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EITC는 가계소득에 대한 보전, 노동자에 대한 보전 또 사업주에 대한 보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기재부랑 관계부처랑 저희가 일자리안정자금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현장 점검이나 대책이 꼼꼼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송옥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진국 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인 교차배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익위원 선정에 노사의 추천과 의견이 반영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공익위원으로 선정되는 법과 제도상의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중노위 위원장님께서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중앙노동위원장 박준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공익위원을 순차배제방식으로 추천을 받고 또 노사 양측에서 교차배제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사 양측과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추천되고 또 불필요한 배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현재 원만하게 재위촉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잘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중앙노동위원장 박준성 예.

○문진국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노위 공익위원 선출의 경우 제도상의 불합리성이 있지만 불공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출은 매우 불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도 정부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공익위원 선정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 및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여 공익위원을 선출하는 등의 방식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최근에 언론에서 공익위원들에 노동계 성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익위원을 선정하면서, 특히 우리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이 높고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런 논의 구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도 여성이 한 명도 추천돼 있지 않고 노동자위원도 한 명도 추천돼 있지 않아서 제가 공익위원 중에서는 여성을 좀 많이 추천하려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법학, 사회학 각 분야에 있는 여성을 넣다 보니까 사용자위원 중에서는 여성이 한 5명 정도, 9명 하는 중에 공익위원 5명이고 사용자위원에서 둘 해서 현재 여성이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계 편향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성을 같이 넣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문진국 위원** 또한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보면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들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회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청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사용자위원의 경우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 현재 장관이 지정한 단체는 총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무역협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위원회에서는 이 곳 외에 또 전경련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는 제외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자단체는 그동안 5개 단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이 이번에 빠진 이유가 전경련이 지난 정부 말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서 해산 논의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이 거기에서 탈퇴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전경련 전체 역할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문진국 위원** 장관님 말씀이 지금 전경련이 많이 빠져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닙니다. 사용자단체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을 하는데 전경련 한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이 지금 회원사들이 거의 다 탈퇴를 하고 그 역할을 못 하고 그리고 전경련은 대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협의회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이런 쪽하고 그전에도 부합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고용부장관께서 사용자단체를 지정하게 되면 정부 의견이 자의적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사용자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한데,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희가 매 정권이 바뀌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권 길들이기를 하려고 위원들을 그렇게 구성한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사용자위원, 노동계위원, 공익위원 하는 데 공정성을 갖고 전혀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매 정권마다 계속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방안들을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모색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현장의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도 그렇고 고용 파탄 그리고 폐업 대란 등도 이제 볼 보듯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준학 장관 등도 이런 최저임금 후폭풍에 대한 입장이랄지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게 오히려 고용, 임금, 노동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주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가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없는데 장관의 존재감도 없다’ 이런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늘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들과는 너무 괴리된 발언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전반적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 추이를 보시면 2018년부터 아예 급감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연도별 취업자 수도 정부가 원래 당초에 2018년 경제 전망에서는 예년과 비슷하게 32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최근에 다시 조정을 했지요. 그래서 18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영향이 전혀 없다.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말씀하실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인데요.

아까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생산가능인구랄지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생산가능인구 같은 경우도 당초 2018년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의 증가폭은 17년과 유사한 32만 명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가능인구를 따지고도 32만 명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결과가 반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했다라고 하는 장관님의 그 발언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구조조정도 자동차 구조조정이랄지 건설업, 제조업도 작년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올해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지금 현장의 목소리와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도 최저임금발 고용 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었다 하는 그 한 측면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0대에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24만 명이 줄었습니

다. 비정규직이 24만 명이 준 것은 5인 미만의 사업장 중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두루누리 혜택을 못 받은 영세사업장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이렇게 해서 상용직이 작년에 비해서 36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에,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고용이 가장 줄어드는 부분은…… 작년 부터 경기가 나뻐어도 전 달을 대비하고 전 분기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드린 것은 GM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선산업이라든가 자동차산업에서 8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에서 사드 영향으로 중국의 관광객 이런 측면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줄었고 이런 외부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했고요.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얘기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감소에 대한 것 거기에는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시간제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은 일부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고용주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이랄지 제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은 최저임금 영향에서 다 자유롭지 않은 업종들이에요. 그 업종들이 결국은 일자리가 배제되는 악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가장 많이 줄어드는 데가……

○**신보라 위원** 음식·숙박업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숙박업 쪽하고 음식업 쪽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래서 위원님, 제가……

○**신보라 위원** 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일부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솔직한 발언들을 어쨌든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뼈아프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예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닙니다, 위원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1/4분기에서 10대하고 20대의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들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숙박·음식업에도 일용직들에 대한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동향이 1/4분기는 그렇게 나왔고 이제 2/4분기가 바로 나올 텐데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최저임금 재심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저임금 재심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저께 저녁에 들어와서 제가 어제 잠깐만 내용을 봤습니다. 우선 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절차나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31년 동안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노조에서도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사용자도 이의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이 찬성을 안한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재심 요청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재심의 결정은 어쨌든 장관의 유일한 권한인데 이것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재심의……

○**신보라 위원** 아니요, 재심의를 요청하는 그 절차요. 그것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의 가장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내용적 이런 데 하자가 있는지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저도 사실 궁금했었어요. 이달 초에 일부 언론에서 당·정·청이 엇박자나고 있다 이러면서 당의 원내대표와 장관과의 어떤 불화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곧바로 청와대에서는 ‘소통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런 논

쟁 정도는 당과 정부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좀 심각한 정도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었어요.

장관 본인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거 얘기해 줘 보실래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본인 느끼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요즈음 정치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여야 그리고 동료 의원 그리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하고도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이나 의정활동하는 데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하는 과정에 노동계에서 원내대표께 항의하는 과정에 장관이 안 보인다, 장관이 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런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전혀 아무런 이견이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언론에서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청와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당하고는……

○**이용득 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풀려져 있는 언론 보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언론의 시각이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 했다 하는 꾸짖음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보라 위원께서 ‘고용이 늘었다고 아까 장관이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용이 전체적으로 는 것은 큰 폭은 아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좀 늘었고 나쁜 일자리는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24만이 줄고 상용직이 30만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용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저임금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나 소득격차 부분을 그대로 가자는 거

냐, 그러면 이것을 복지정책으로 볼 것이냐 경제 정책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양쪽 둘 다 경제 부문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한쪽은 이러다가 경제가 망한다고 그러고 있고 한쪽은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이런 소득격차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러는데, 어쨌든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은 소비로 직결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한계소비계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러면 소비 진작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이니까 최저임금이 올라야 되고 소득격차가 줄어야 되고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되고, 이게 장기적 정책 방향에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우려들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당장 죽겠다고 하니까……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을과 병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몇 가지 대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왔던 방향으로 고용노동부, 정부도 그렇게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가실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예,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얼마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득불균형 이런 부분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편의점, 자영업자, 다 소상공인에 들어가지만…… 그동안에 경제민주화 관련된 원청과 하청, 본사와 대리점 간의 여러 가지 골목상권의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면 수익구조가 좋아지고 최저임금 인상하는 부분에 지금 여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회에서 아직 법 개정이 덜 되고 있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골목상권이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중소벤처부하고 저희가 고용노동부가 같이 협심해서 8월 달에 카드수수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정책을 발표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러니까 을을 위한 대책 방안을 관계부처들끼리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하겠다는 말

씀이네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재심 청구 부분에서 최저 심의위원장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이의 제기가 그동안 보면 양쪽에서 수차례 이상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동계도 열몇 번씩이나 이의 제기를 했지만. 그런데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 그래서 ‘고려사항이 뭐냐’ 하니까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립성하고 중립성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가 31년 동안 노·사·공이 같이 합의해서 된 적은 일곱 번 정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측이 나가면 노측이 있고 노측이 나가면 사측이 있어서 이의 제기가 계속 들어왔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과정에 대한 문제만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했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킨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 이런 부분은 저희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지금 경제상황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고용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고용 상황이 올해 들어서 계속, 신규가 10만 명대여서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안 좋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이장우 위원** 지금 현재 미중 무역전쟁 또 국제유가 상승, 고용 쇼크로 인한 민간설비투자 축소, 대내외적으로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냐 하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OECD 경기선행지수도 99.5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고 자영업자 원화 대출 총액도 549조 2000억

가까이 되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60%가량 증가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영세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말씀드리는데 작년 동기 대비 7만 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올 1분기에 71%로 200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경제심리지수도 98.2로 전월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6월 달 기준으로 본 소비자심리지수도 105.5로 작년 말 기준에 비해서 5.1% 하락했습니다.

과자·안주류 값 최대 30%가 상승했고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외식메뉴 8개 중 7개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 2개 중에 1개가 가격이 상승됐고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20으로 작년 대비 1.5%가 올랐습니다.

올 들어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휘발유 값은 4.3%, 경유값은 5.8%, 이렇게 지금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5개월 연속 증가폭 10만 명대 이하의 고용 쇼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지난해 대비 석 달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은 3대 업종의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1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소매업은 6만 2000명, 숙박·음식업은 2만 4000명, 시설관리 사업자 및 임대서비스업 2만 4000명,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2시간짜리 아르바이트 자리 받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장관님께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장관 하시면서 느끼는 것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국민들은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60%가 깨져가지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면 대통령 지지율이 50%도 연말쯤 깨지리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경제사정이 워낙 안 좋고 고용 상황이 워낙 안 좋습니다. 국민들 불만

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냐? 바로 고용노동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도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부문이라고 봅니다.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공익위원들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 정부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하고는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게 급격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1만 원 목표라든가 그리고 주 52시간 뿐만 아니고 더 단축하는 문제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목표는 분명히 설정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시장 상황하고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요구가…… 작년엔 제가 기재부장관한테 두 번이나 대정부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상승된다, 그러면 결국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그 현상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업률이 급격히 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포함해서 세금이 지금 폭탄처럼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장관님을 포함한 현 정부가 유토 피아적, 정치적·경제적 전망을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그런 이상론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단편적인 왜곡된 편견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결국 국민들 지지를 저는 잃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작은 정부론자입니다. 정부가 오직 국민의 생명하고 자유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소한의 권력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

는 사람입니다. 시장에 상당 부분을 맡겨야 국가가 성장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 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접 가 보셨습니까? 제가 편의점에 갔더니 어떤 어머니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그랬더니 ‘직원을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둘이 합니다. 직원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24시간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12시까지 하고 못 합니다’, 정부를 아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가족의 생계가 있고 경제활동을 해서 책임지는 분들인데 지금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부, 일자리를 위한 정부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원성이 갈수록 높아 가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관료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장님, 답변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학용 예,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이장우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취업 증가폭이 둔화되고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도·소매업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부도 대응과 대책,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서 지난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일자리나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니까 나중에 위원님 방으로 보내 드리는데,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EITC 업무 확대하고 여러 가지 지급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에 편의점 말씀하셨는데 편의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8년

동안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편의점업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매출의 35%를 본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출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편의점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편의점뿐 아니라 불공정행위에 대한 것도 바로잡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장우 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결국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얼마 전에……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최저임금 부분이 오늘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문제인 정부의 핵심공약이고 또 촛불시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비판적 의견을 내주셨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의 실제 원인은 무엇보다도 과도한 임대료라든지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라든지 높은 카드수수료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경영의 어려움의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고용도 일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이나 근로소득장려세제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고 또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정책이나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러면 비판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지금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 임대차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상생협약을 통해서 상권의 내몰림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법 입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지금의 혼란을 줄일 수가 있고 여기에 좀 더 우리 상임위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문제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을과 을의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역량을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해서 제가 하나 체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신청률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149만 명, 신청자 중의 67%가 지급됐는데 현재 예산액의 30.9%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러한 일자리안정기금의 효과를 아직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게 주요한 불만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이와 관련된 진담인력이 853명에 불과해서 1인당 거의 2760명 정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늦어져서 실제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되어서 시장의 불만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부정수급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23건으로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의 부정수급자를 거를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선대응 시스템 마련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가지 부분, 신속히 지급할 대책과 부정수급

자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지급하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들어온 게 2월 하순부터 3월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후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수급체보센터에서 거르다 보니까 현재 163개 429명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정도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 사후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원이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창구를 하다 보니까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비정규직 같은, 임시직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이 또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달부터 여기에 대해서 인력 투입을 하고 최대한 신청자들이…… 그전에 한 두 달 걸리던 것을 요새는 한 1개월 안에 처리하는 등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부정수급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현재 신청한 것 전체 중에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국세청, 행안부, 대법원 등 행정 DB를 활용해서…… 허위 근로자 신청 등 부정수급이 그전에 사전차단이 안 됐습니다, 정부부처 간에 서로. 이 부분을 지금 제도는 하고 있고요.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근로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없는 노동자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 점검을 통해서도 저희가 걸러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5배 제재부과금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서는 부정수급이 확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조치 7개소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서 또 행안부를 통해서 DB를 활용해 가지고 더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임이자 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이용득 위원님과 이장우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정·청 엇박자, 오락가락하는 정책 관련돼 가지고 소통에 문제없다, 청와대에서 소통이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정·청이 소통이 문제없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지요. 국민이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 당·정·청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장관님 발상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저도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봅시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서 당시에 촛불에 의해서 정권을 잡아서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근로시간 단축 당장, 즉각 시행해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에서 문제가 많이 우려된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나마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노동부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계도기간 지금 6개월 두고 있지 않습니까? 즉각 시행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또 하나, 탄력적 근로시간 관련돼 가지고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당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노동부장관께서는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오늘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 당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삼화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도개선의 방법을 모색하자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당 불같이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실태조사를 언제까지 해서 언제 할

건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방향을 전환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겠다는 건지, 연장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국회의원도 이렇게 헛갈리는데 국민들은 오죽 헛갈리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은 어땠겠습니까? 안 그래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맞습……

○**임이자 위원**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최저임금 관련돼서 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말씀하시는데요. 미화원, 경비원들이 임대료하고 카드수수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관님? 그분들하고 카드수수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미화원이나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실직을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관련돼서. 또 그분들이 고용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안 그래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경비원이나 청소원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감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습니다, 위원님.

○**임이자 위원** 일자리안정자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조해 주는 측면에서 일자리, 고용안정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주들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유지시킨다는 명목하에서 올려 주라고 했는데 임금인상은 일어나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격이잖아요. 그게 부정수급으로 지금 전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 계속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요, 저도 노동자 출신입니다.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많이 올라가서 전부 다 좋아지고 정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다면 저 바랄 게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선순환만 말씀하시지만 악순환도 있어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자영업자들 문 닫고 그다음에 힘없는 취약계층 해고당해서 결국은 근로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 공적부조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

다.

제가 왜 반대하셨어요, 임금인상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면적으로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 공약 달성을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9% 나온 부분들이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공약 달성하려면 더 올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약 달성 못 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어떻게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지요?

재심의 요청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 돌리지 마시고.

그러면 재심의 요청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재심의 요청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으면……

○임이자 위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요.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뭘 또 살펴볼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장관님,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재심의 요청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최저임금위원장님.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임이자 위원 지금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보게 되면 너무 웃겨요. 임금인상률 전망치 3.8%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소득분배 개선 4.9%,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위임금이 아니고 이번에는 평균임금으로 갔지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임이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산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이라고 해서 1.0%를 줬는데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산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해서 산업범위에 대해서 했는데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또 하나, 협상배려분 1.2%, 이것 끼워 맞추기 식이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1만 원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협상배려분이라고 했는데 협상 배려를 해야 된다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으로 모여 가지고 못살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양쪽에 물어보고 차라리 협상 조정을 하시든지, 협상배려분이라고 1.2% 하나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복종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전체가.

장관님, 이것 위법 처리 다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아까……

○임이자 위원 다 하실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하지만 저는 소상공인들의 수익구조가 낮아지면…… 지금 의견을 개진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내년 1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임이자 위원 불복종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이자 위원 어떻게 장관님이 단정을 짓습니까, 그것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편의점 업계……

○위원장 김학용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앞서 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청소, 경비 이런 부

분들에서 부정수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비나 청소, 아파트 관리는 사용자가 대표자입주자회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회의한테 보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원된 안정자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이라서 거의 저희한테 신청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한테 민원 들어오신 것 주시면 저희가 근로감독을 나가서……

○임이자 위원 다 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2월 28일 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627개가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개월 동안 저희가 다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을 갖고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 사람을 뽑고, 그래서 경총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당·청에서 계도기간을 준 것이지 법을 미룬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3627개 한 데 60% 이상은 52시간을 이미 넘지 않는 데가 있고요. 40% 중에서 20%는 인원을 다 뽑고 있고, 300인 이상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다만 계절산업, IT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개월 탄력근로 그 기간 갖고 어렵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말이 다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력근로를 6개월을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다 조사를 해 봐도 이미 60%는 52시간 내 할 정도면 이것은 무조건 6개월 할 게 아니라 해당 업종, 수출업종이라든가 계절산업이라든가 IT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서 정말 필요한 업종에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해 보자는 것이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임이자 위원 언제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잠깐만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대변인을 통해서, 무조건 6개월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대변인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이자 위원 여당 위원님들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학용 임이자 위원님,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집행부 쪽에서 웃고 그러시면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박화진 기획조정실장님 일어나 보세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예.

○위원장 김학용 제가 한 번만 웃으셨을 때는 실명을 거론 안 하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웃고 계속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뜻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유독 한 분만 계속 웃고 계시면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한 번만 웃으셨을 때는 제가 실명 거론을 안 하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그 후에 계속 웃고 계속요.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주의하겠습니다. 오해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다음은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오래 전 얘기가 아니라서 기억을 잠깐 좀 되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000원대인 최저임금은 올려야 한다. 1만 원 가까이야 돼야 한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을 못 한다는 기업은 이미 한계기업이다’ 이 얘기는 지난해 3월 대선에 출마하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공약 집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임기 내에 실현하고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을 만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계층은 서민과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고생하고 있다. 서민과 청년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5년 내 1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1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1만 원을 공약을 했고, 다만 1만 원 공

약의 달성 시기를 우리 당의 문재인 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가 2020년 그리고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두 분께서는 2022년 이렇게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각 당의 대선 공약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동반해서 마련하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섬세하게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4대 보험료 지원까지 해 주겠다고 아주 세부 공약까지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막 오래된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게 아니라 지난해,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도 그랬습니다. 야당일 때도 우리가 총선에서 공동으로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서 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회가 예산을 마련하자고 우리가 그때도 요구를 했고, 우리가 여당이 된 지금도 저희는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동 공약인 것 맞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시기가 문제인 것이지요. 시기가 다른 것이지요. 시기를 2020년으로 하기 어렵다고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되 1만 원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각 당이 고민했었던 지원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국회가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방법을 가지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방안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면 모든 정당이 국민께 석고대죄하면서 다 '이것 못 지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제 발언을 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제 정당이 공통 공약을, 공동으로 이 공약을 내세웠을 때는 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다르게, 달리 다가올 수가 있는가……

여전히 최저임금 1만 원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물

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장님 자체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올려야지요', 올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국가가 우리에게 뭔가 좀 견뎌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지난해에 대선에서 다들 공약들을 내세운 겁니다.

각 제 정당이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청년일자리가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만 청년층의 일자리를 보면 그래도 지난해 대비 올해 동기 대비로 보면 0.2%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비용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것은 청년희망재단에서 뭐가 어렵냐라고 했을 때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것이지요.

또 최근에 통계청 연구 결과 보면 청년들이 첫 입직까지, 그러니까 첫 일자리로 가기까지 보통 10.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직장에 이르기까지 입직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현재 고용노동부가 취업패, 취업성공패키지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당을 주고 있어서 청년들이 취업·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취업패나 또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지, 취업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원래 취업성공패키지도 2단계까지 하다가 청년들 요청으로 지금 현재 3단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청년 구직활동을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

고요.

그러면 올해 취성패를 통해서 청년들 구직촉진 수당을 받아간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실적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청년들 실적은요……

잠시만요.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준비는 안 해……

○**한정애 위원** 아니, 옆의 차관님 혹시 데이터 기억나시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찾아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현재 취성패 올해 받은 사람들이 18만 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요.

○**한정애 위원** 권혁태 국장께서 아마 아시는 것 같은데 잠깐……

평균 3개월을 거의 다 받아 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권혁태** 지금 최대 3개월인데요, 정확한 평균 기간은 저희가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 구체적인 통계 내역들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권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을 공약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한국당도 1만 원 공약 달성을 2022년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방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정정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이렇게 세금을 퍼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근로빈곤층, 저소득가구에 EITC로 보완해서 1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공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EITC를 3배로 올려서 근로빈곤층에 가구소득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당의 공약을 이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최저임금 인상을 어느 정당, 정치권이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인상폭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급격하게 무리하게 인상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혀 준비 없이 인상했다는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예요.

지금 장관께서 가맹본부 갑질이다, 카드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정책들을 먼저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적정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먼저 하지 않고서 최저임금을 선후를 바꿔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 없는 무책임한, 무능한 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바로잡고요.

최저임금위원회장께 여쭙보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나 청와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해 왔습니까?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그런 적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습니까?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 독립성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장관께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셨는데 그건 정말 말장난입니다. 구성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다 관여해서 임명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 위원장님도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임명해 놓고, 특히 공익위원들 말이지요. 그래 놓고 나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한다, 누가 어떤 국민이 그것을 끝이곧대로 듣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제가 청와대하고 소통했냐고 여쭙봤더니 안 했다고 그러셨어요.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좀 나와 보세

요.

최저임금위원회에 계속 특별위원으로 참여하셨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왕**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상황을 장관께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무국에서 회의 결과 정리하면 그것을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청와대와는 소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왕** 소통하지 않았습니니다.

○**김동철 위원**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왕**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청와대는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왕**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장관께도 보고하고 청와대에도 보냈습니다.

○**김동철 위원** 청와대의 사전 지시 같은 것 없었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왕** 없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었어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왕** 예.

○**김동철 위원** 최저임금위원장도 똑같은 답변이십니까?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은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은 아니고 박근혜정부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보면, 2014년에 201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날 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6월 20일에,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부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다 독립적으로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증거로 드러났어요, 비망록에서. 그래서 답변 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어느 누구하고도, 위원장은 물론이고 근로기준정책관, 최저임금위의 어떤 사람도 청와대와 사전 소통 같은 것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김왕 정책관 이야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왕**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다음에 장관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축소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거부 투쟁에 나서겠습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그분들이 고용을 축소하지 않았겠어요?

얼마 전 보도도 됐지만 무인판매기기가 예년에 비해서 3배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팔리면 그만큼 3배 이상 고용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 10.9%는 아직 시장에 반영도 안 됐어요. 내년에 반영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정직한 정부라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지요.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상황이 이렇게 나빠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강변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책을 찾아야지요. 그게 저는 최저임금 재심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인상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상황을 전혀 호전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연에 금년에 최저임금 재심을 장관께서 요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정말 우리 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솔직한 정부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총에서 재심의 넘어온 것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많은 위원들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실업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용직이 30만이 늘고 비정규직이 24만 명

준 것에는 비정규직이 좋은 일자리, 상용직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인 미만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편의점, 자영업자들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고용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언론에다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할 순서이나 오전에 인사를 못하신 김태년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고서 인사말씀하시는 김에 질의까지도 부탁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위원입니다.

환노위에 와서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노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서 정책 부분은 그렇게 낯설지 않는데 회의장은 처음 와 봐 가지고 무지 낯섭니다. 전에 있던 회의장은 저쪽에서 이쪽을 쳐다봤었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얼떨떨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최임위 위원장님 와 계시지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김태년 위원** 지금 우리 최임위가 사용자대표, 노동자대표 또 공익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사용자대표 포선에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지금은 공식적으로 추천은 되어 있지 않는데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사용자단체에서 소상공인 대표라고 추천을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또는 이해관계, 현실 이런 것을 다 놓고 보면 사용자와 소상공인,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겠지만 지불능력의 한

계,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거의 자영업형 근로자, 자영근로자 또는 자가근로자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지만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현실 아닌가요? 따라서 최임위도 그렇게 구조개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그런 식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임위의 공익위원 그리고 노사위원의 구성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서 논의되고 이런 구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법령상의 문제인데, 위원장으로서 법령을 그런 방향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제가 최임위 위원장 입장에서 그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 부분은 사용자위원들은 아까 말한 대로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있고 노동계는 노동계에서 해서 공익위원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부분……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부분을 별도의 포선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도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 대표도 9명 중에서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김태년 위원** 오늘 길게 토론할 내용은 아니고 한번 정밀하게 함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김태년 위원** 장관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경제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이 현실과 지적,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앞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현재 이런 경제가, 우리 경제가 나쁘게 마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나빠졌다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에서 많이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만……

○**김태년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신규 취업자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김동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신규 취업자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또 우리가 잘나갔던 전통 제조,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구조조정 이런 게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신규 취업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나 해외나 일관되게 결론이 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현재 나온 바는 없어요. 최근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반기 고용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0.2% 오히려 올랐고요. 특히 여성 취업자 수가 1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률은 0.4% 올랐고요. 그리고 상반기 전체 평균은 상용직이 37만 명 늘었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6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질은 좋아졌는데 다만 임시·일용직이 20만 명 감소했고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8만 9000명이 감소되어서 비정규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태년 위원 분야별로 종목별로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게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여기 회의장에 오기 전에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비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만 비용이 아니잖아요. 카드수수료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 맺은 가맹점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을 총량적으로 관리해서, 예를 들면 인건비가 올라갔으니 다른 부분에서 조금 비용을 덜어뜨리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드수수료율도 내릴 방안이 있으면 좀 내려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범정부부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당도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제로페이’라고 작명한 간편결제시스템도 범부처간에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최저임금위원회 경영자 측이 다 나갔을 때 편의점 업주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그리고 본사수수료,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 우리가 많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임대기간은 5년에서 10년 그리고 카드수수료 인하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0%까지 갈 수 있는 금융위원회, 정무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분 또 중소벤처, 각 모든 부처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소상공인 대책,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편의점의 예를 들면 어느 보고서를 보더라도 편의점의 적정 개수는 한 2만 개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4만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자영업까지 7만 개로 나와 있습니다, 편의점이.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브랜드 없는 편의점까지 하면 한 7만 개 정도까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과다출점, 과당경쟁 이게 구조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면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키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당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노동부 소관 업무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19대 때 제가 국회에서 동일한 편의점은 일정한 거리 안에 못 하게 법률로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24시간 편의점을 인근 거리 몇 미터 이내에 신규로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위원님당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저는 지금 제가 환노위에 와 있는지 기재위에 와 있는지 정무위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맞지요? 장관님, 여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여기 맞지요?

고용노동부 주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고작 카드수수료 얘기가 왜 나오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최저임금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런 변명 좀 하지 마시고요.

저는 김동연 부총리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참 답답한 느낌을 갖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고용부진에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닌데,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다 조율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부총리가 지거나 아니면 담당 주무장관이 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의 부총리라는 사람은 사돈 남 말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무장관은 자기 정책에 대한 실패, 성공 여부는 얘기를 안 하고 남의 부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소득주도성장 계속 강변하셨는데요. 이미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그 효과가 허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도 지금 그 말 안 쓰지 않습니까? 포용성장이라면서요? 그 말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최저임금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격차 줄여야지요. 그런데 이 정권이 그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급격히 상승시키는 게……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슴이 따뜻해도 그 정책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실효가 되

어야지 엉뚱하게 역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아무리 보수는 따뜻한 가슴이 없더라도 진보는 차가운 머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 작년엔 대폭 올리고 내년엔 또 올린다는데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소득현황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챙기고 돌봐야 할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이 14.6%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부의 통계입니까? 이게 이 정권의 정부 통계입니다. 통계청 통계예요. 그렇게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하고 싶으시면 왜 최저임금만 올립니까? 모든 가구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다 뿌리세요, 차라리.

그다음 PPT 한번 보세요.

아까 자살률 말씀하셨지요? 자살 안타깝지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려서 우리나라 자살률 개선이 됐습니까?

실업자 한번 보세요. 장기 실업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실업자 늘어나면 이게 얼마나 가정에 불행한 요인이 됩니까? 실업자 늘어나는데 자살률 줄인다? 이게 언어도단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정책을 써 가지고 OECD에 자살률을 줄이고 소득격차를 줄인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OECD가 오히려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저 위에는 영문이고 밑에는 한글인데요. '54%의 최저임금 인상은—물론 물가상승률을 빼면 45%인데—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생산성의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물가 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한국의 국제적인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다', 대기업 망하고 실업자 늘리고 최저임금 올려 가지고 국제경쟁력 떨어뜨리면 장관이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아까 내일이라도 금방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책임을 통감하시면 오늘이라도 그만두세요. 사표를 내세요. 아니면 이 정책 바로 잡고 끝까지 계셔야지, 그만두겠다는 게 가장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고용노동부 머리 좋은 관료들하고, 장관을 호도하고 이렇게 장관님한테 엉터리 답변이나 써 드리는 고용노동부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한번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제발 좀 고민을 하세요, 변명과 본질을 호

도만 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효상 위원** 자꾸 카드수수료, 상가 임대차법 고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장관님 주무 소관이 아니시잖아요. 지금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누가 지금 경제 상황 악화가 꼭 모든 게 전부 최저임금제라고 말한 바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중의 하나면 부총리와 머리를 맞대서 이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충격을 줄일 것인가, 고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지 자꾸 남의 부처 탓하고 변명하고 그게 장관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까, 그게? ‘서툰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보니까 바로 그 말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가지고 붙들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이제는 정책을 고쳐서……

지금 바깥에서 절규하고, 오늘도 네이버 뉴스에 보면 자영업 폐업 뉴스가 사진에 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고도 지금 카드수수료 얘기가 나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효상 위원**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자영업이 폐업을 하는데 카드수수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동의하지 않습니다. 카드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효상 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 그 부서에 가서 내리세요. 내리시면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런데 그것은 국회에서 해 주셔야 될 문제고요.

위원님, 제가 왜 카드수수료나 임대료나 소득구조에 대해서 자영업자가 이익구조가 높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최저임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와 되는데 현재 모든 이익구조가 본사에 납품

하는 것이나 카드수수료 내고 임대료 내고 나면 최저임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강효상 위원**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포용성장으로 하셨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포용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상위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다 경청을 하는데, 해주는 것 갖다가 장관이 그냥 읽지 않습니다. 저도 국회 환노위에서 17대, 19대, 20대째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고 상임위에 나와서……

그리고 제가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침에 제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제가 있고 싶다고, 대통령께서 내일이라도 해임하시면 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와 관계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효상 위원** 그러니까 좀 잘하시라고요. 제발 좀 잘하세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강효상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회의 분위기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을 많이 내세요.

지금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께서 아마 장관께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왜 환노위에서 카드수수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과다출점 이야기하고 있느냐, 노동부 업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다른 부처의 업무인데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부처 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정책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정책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에 칸막이를 뜯어내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정부에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

까?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것, 내 것. 이것은 네 탓, 내 탓’ 이렇게 하지 말고 부처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뜯어내고 협업하라 이렇게 주문을 받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정부가 내년에 EITC를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EITC가 확대됐으니 일자리안정자금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 EITC를 확대하게 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ITC 부분은 근로장려세제를 하는 것으로 노동자한테도 주고 가계소득에 대한 그 가계에도 돌아가고 또 사업자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은 우리가 저임금 세대에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일자리안정자금하고는 그 성격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EITC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은 큰 틀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 공통점은 있는데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김태년 위원** EITC 지급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이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대상은 영세사업주인 것이지요.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서 사업주가 지게 되는 인건비 부담을 EITC가 털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과 EITC는 다른 트랙에서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처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세소상공인 또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

서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중요한 경제정책의 전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9년간하고, 작년 5월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 바뀐 경제정책의 효과가 1년 만에 확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무리인 것이지요.

이것은 어느 나라를 보든지 간에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의 효과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진작시켜서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이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거의 1년 되어 가지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첫 취임하시고 나서 사실상 마비돼 있던 과거의 노사정위원회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겠다고 의지를 하신 것 저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지요. 지금 임기가 1년 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법률도 바뀌고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도 바꾸고 그리고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위가 노동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위는 아니지요.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사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사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관계자가 다 양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면피용 답변이고 사실 어느 한쪽이 더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공유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기업별 노사관계는 임금이든 고용조건이든 다 대화와 타협을 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제가 나오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기업 하시는 분은 기업 하시는 분대로 하고 있어서, 어쨌든 기업별 단위에서 하고 있는 대화와 타협의 수준과 내용을 사회적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리고 취임 초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기업의 거대노조? 이런 데가 이제는 좀 양보해야 된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하셔서 경제신문 또 몇몇 큰 신문에도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 정권은 과거의 이명박·박근혜 정권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게 되면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가 사민당 총리였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는 당시 슈뢰더 총리가 그들의 정권의 기반인 말하자면 노조 측의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내서 대타협을 했다고 하면 현 정권 그리고 또 위원장님의 어떤 경력 이런 것을 볼 때 좀 더 노측의 어떤 설득에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부터 많이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큰 이슈인 최저임금 또 근로기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별로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책임이 아니어서 제가 발언을 아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지나 놓고 보니까 노사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 문제들은 또 당연히 사회적 대화라는 틀을 통해서 저희들이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사 양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와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해법을 논의해 보자,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은 저는 노동현장 출신이지만 정확하게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고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노조를 어떻게 설득하고 참여시킬 것인가 저한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

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슈뢰더가 한 독일형 사회적 타협은 금년 상반기에 우리나라도 기업별 차원에서 됐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금호타이어나 STX조선이나 지엠코리아에서 큰 틀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노사정이 그 책임을 분담하는 기업별 차원에서는 타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정신을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회도 말이지요, 여당 위원들이 왜 이렇게 안 앉아 계신지 모르겠네요.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회 내에서 이렇게 돼 있고 만날 그러는데 과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업무현황에서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이번에 출범해서 사회적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대화에 착수하겠다 또 두 번째, 본격대화를 추진하겠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 한가한 것 아닙니까? 난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이 논쟁이 계속 더 커지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노동부라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기구고 이것은 국회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뭔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대화에 착수하겠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향후의 계획이다 하면 너무 좀 한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조속히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것밖에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거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 장관님, 얼굴이 좀…… 웃으세요, 좀 편하게 하세요.

현재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재정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심각하게 보고 있지요?

최근에 3년간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이 매년 증가 추세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계정의 경우에 15년 대비 5480억 원, 실업급여 계정은 788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의 계정별 적립배율은 법정 최소 적립배율이 1.0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계정은 1.7배에서 1.4배로 낮아졌으면서 또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 실업급여 계정은 0.7배에서 0.9배로 증가는 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계정은 2017년 재정수지가 1900여 억원의 적자로 돌아섰으며 법정 적립배율도 낮아졌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여러 가지 부분이 가장 많은데 가장 큰 부분이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아니, 어디에 지출이 많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모성보호기금에 차이가……

○**문진국 위원** 모성보험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재정수지가 법정 적립금이 낮아진 원인분석에 대한 것은 청년일자리사업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적극적 대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일시적 지출의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의 집행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추경까지 편성하여 9만 명에게 2000여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률이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추경을 통해 1480여 억원을 증액했음에도 현재까지 본예산의 10%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1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도 버거운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

을 추진하여 실적이 부진한 것을 보여 줬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많았습니다. 2명을 해야 1명을 채용하는 2+1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정말 10%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6월 1일부터 1명을 채용해도 저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꾸어서 6월 1일부터는 지원 인원이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현재 10배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목표 인원은 연말까지 한 9만 명은 될 것 같고요. 앞서 지적해 주신 내일채움공제는 금년도 2년분이 4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추경을 해 주셔서 가지고 이게 6월부터 집행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총 목표의 64%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진국 위원** 현재 64%다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7월 20일 현재로요. 그래서 현 추세라면 연말에 국회에서 해 주신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실업자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3조 2700여 억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동 기간 대비 6000여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현재의 고용상황은 금융위기 이래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KDI를 비롯한 주요 대내외 기관의 경제전망치도 낮아 앞으로 일자리쇼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30일을 연장하는 것을 논의 중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이기도 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논의가 되어 있고 또 현재의 기금 상황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노사단체라든가 고용보험 제

도개선 TF를 운영해서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재정 소요,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마련하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동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내 드리고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에는 3000억 원, 2025년도까지 총 2조 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제 적자 전환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실업급여 지급 확대에 따른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어렵고요, 일자리정책의 부실한 원인을 꼼꼼히 따져서 실업을 낮추고 또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장관님이 조속히 강구해 주셔서 원활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장관님, 저희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영향에 대해서 최저임금 말고 모든 탓을, 최저임금을 제외한 모든 탓을 찾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용과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칸막이에 따른 그런 문제로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

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부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상가 임대차탈지 수수료 인하를 고민하는 것처럼 적어도 고용과 임금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고용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대안, 무인화에 대한 대안, 실은 이런 고용악화 상황에 대한 유일한 대안을 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안정자금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고민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칸막이에 따라서 다른 것을 들여다보지 말라 이런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끝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계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훑어보지만 하고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살펴봐도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서 기준사안이 절차적·내용적 하자의 검토라면 반드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아까 임이자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감소 보전분 1.0%를 반영한 것, 그것이 어쨌든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이었고 그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명백히 법적 사안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 1%를 반영했다는 것은 실은 이 최저임금법의 개정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위법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1%에 대한 부분을 아까 최저임금심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계가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을 심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에 대한 산입범위가 최저임금을 157만 4000원을 받는 그 부분에 가장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월 상여금 25% 그리고 복리후생비 7%가 들어가면 월 평균 한 24

0~250만 원씩 상여금을 받던 사람들이 10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그 전제에 있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못 받는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입범위에 대한 문제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신보라 위원 아니, 그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도 최저임금법에 똑같이 기술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그것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다릅니다. 이것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는 별도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니요, 기구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기구에서 논의되는 내용, 거기서 나오는 금액도 아까 위원장님이……

○신보라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초점은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보전분을 반영한 것 자체가 위법사안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위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보라 위원 어떻게 위법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3%가 오르면 3%의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넣고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전체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일부의 최저임금을 받던 부분들이 내년도, 2019년도에 최저임금에 해당이……

○신보라 위원 아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기준에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전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 얘기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앞서 최저임금을 만들 때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1%를 만들어서 저임금노동자들이 그냥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에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인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법하고 위원님 말씀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에 노동자들이 그 급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사·공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포함을 시켰다 그러면 위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법 위에 그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번 위원장님 말씀……

○신보라 위원 저는 그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이 부분은 위원장님……

○신보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에 위원장님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ECD 국제기준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강효상 위원 질의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히 아시겠지만 OECD가 임금산정에 대한 상대적 기준을 논의할 때 쓰이는 임금이 됩니까? 중위임금이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갑자기 그것을 평균임금으로 바꾸었어요, 국제적 기준에서는 대부분 중위임금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위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바뀌는 그 과정도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최임위에서 넘어온 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젯밤에 경총에서 저께 넘어와서 아직 판단은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 포함이 됐는지, 산입범위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지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신보라 위원님 말씀 중에서 두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에서는 중위임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을 같이 비교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동계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

고 그것이 초반에 노동계가 탈퇴하는 그런 문제까지 일으켰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것은 법의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논의됐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사·공이 판단한 것은 이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필요성애다가 동시에 기대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조정하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신이라면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부분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기대이익이 급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절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것은 반영해서 안 된다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법을 만든 취지에서 기대이익 감소 부분을 우리가 일정 부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노동계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쪽 데이터만 중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7.8%, 7.7%……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이익의 감소 부분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은 현 상황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국회가 기대이익의 감소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노동계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법위에서 그것을 결정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저희들은 법을 대단히 존중을 했습니다. 존중하고 당연히 법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정신과 노사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논의의 필요성, 정확한 데이터의 필요성 이런 것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그 부분은 법의 원칙에 맞게 명확히 거절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장님, 앞서 신보

라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나중에 해 달라는 부처 칸막이…… 마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고용절벽에 대한 이런 부분을 대책을 만들지 않고 다른 부처 핑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노동부가 경제부처도 되고 사회부처도 되는 부분이 사회부처라고 하면 노사관계 이런 부분이 있고 경제부처라고 하면 저임금노동자라든가 우리가 노동자의 삶의 존중 이런 부분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서는 국회에서 정해 준 일자리안정자금에 의해서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법에 맞추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정부가 사업주들한테 돈을 해 주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불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지급범위를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되고 이익금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에서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 부분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고 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7월 16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말

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돼요.

최저임금 약속만 못 지켜서 사과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통령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하시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이지요, 장관님 하시다 보니까 현장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 있지요?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것 얘기 들어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들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부분……

○**이장우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딴 얘기……

고용주들께서 숙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못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도 이제 경험 있는 숙련된 사람만 일부 쓰겠다 이 얘기예요. 왜? 짧은 시간만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편의점에서 예전에는 하루 종일 쓰다가 이제 부부가 하다가 작은 타임만 써야 되는데 경험도 없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데려다가 굉장히 효율이 안 나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학업에 정진하는 청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 좀 전에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최저임금의 과다한 인상이에요. 시장의 여건에 맞춰서 인상하면서 그런 목표치를 조금 늦더라도 차근차근히 가는 게 맞는데 오로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 노동계의 의견만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국민들로부터 급격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 거기의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장관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정부 측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왜? 장관께서 추천한 분들

아닙니까.

결국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대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올려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공익위원들한테 그런 통보가 가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면피용이다, 청와대나 정부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뒤 가지고 거기에다 책임을 넘기는 것이다, 독립성을 강조…… 그렇지만 사실상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으로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에 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도 대표성을 가져야 될, 예를 들어 중소기업인들 일부나 농업인들 이런 분들은 또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관께서…… 사실은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고용’이 앞에 붙어 있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고용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국민들의 실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청년실업은 IMF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9% 가까이? 그런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그 중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완전히 실패해서 폐기해야 될 정책입니다.

일자리는, 왜 미국 같은 데서 항공산업, 자동차산업을 급격히 유치하고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느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이 확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항공 부문, 조선 부문,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예로 베트남 공장 가면 거기 얼마나 조립하는 분들 많습니까? 지금 외국으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또 서비스업,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은 주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과거에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대해서 결국 못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 지금 여당이 돼서 강력하게 혁파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그리고 기업들을 목을 죄듯이 계속 압박하는 것

만……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친노동 정책도 필요하지만 친기업 정책도 필요하다, 기업들에게 투자 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장관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국정 수행을 일방적인 청와대 독주로 간다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미리 경고를 해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재부장관한테도 두 번 그렇게 말씀했는데 한 번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부정했었는데 지난번 예결위 할 때는 긍정적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청와대하고 주무장관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부처 내에서도 엇박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나 같습니다. 지금 밖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통령께서 7월 16일 날 최저임금 인상 2020년까지 1만 원 못 지키게 되어서 유감 표명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수시로 수보회의나 국무회의 때 모두발언에 국민들께, 자영업자 어려움,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려운 것의 대책 마련하고 저희한테도 주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득주도성장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수시로 하십니다.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같이 가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세 축의 하나지 소득주도성장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일부 축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어려움, 저도 충분히 느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조선산업, 자동차, 해운업은 최근 3년, 5년 전부터 정말 계속 그게 우리나라 주원인이 되고 지금 또 유가, 여러 가지 경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인한 이 대책을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오르면 많이 오르면 간에 취약 계층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로봇으로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자동화를 강화하든가 거기서 못 견디면 해외로 나가든지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감소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인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장관님께서서는 포용적 성장이 상위개념이고 소득주도성장이 하위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오늘 대통령께서 회의하신 것에……

○임이자 위원 장관님, 포용적 성장은 뭐고 소득주도성장론과의 차이는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는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적 성장 안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포용적 성장 안에 이 소득주도성장이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고……

○임이자 위원 장관님 경제학 전공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 포용적 성장은 2012년부터 사용했던 용어인데 지금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포용적 성장이 소득주도성장 위 개념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세금주도 분배입니다, 세금주도 분배.

지금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라도 해서 내수를 촉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더 늘려 보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

은데 그렇게 선순환적으로 간다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전에도 발언을 했다시피 악순환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소득주도성장론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 왔을 때는 맞아떨어졌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성장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장동력이. 그때 성장동력은 균수물자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성장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 1970년대까지 이게 유지됐던 부분들은 그래도 자본의 황금이 도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성장동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핵심 주요 산업이었던 조선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이 사양으로 가다 보니까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지금까지 운운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소를 잡아먹어도 키워 가면서 잡아먹어야지 그냥 있는 것 다 잡아먹고 나면 소는 누가 키워니까, 장관님?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이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름까지 바꿔 가지고 법 개정시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꿔 줬는데 1년간 허송세월하고 계세요. 위원장님을 문재인 정부에서 그 막중한 일명 노사정위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수장으로 임명했을 때에는, 한국노총도 아니고 관료 출신도 아니고 민주노총 출신인 위원장님을 수장으로 모셨을 때에는 민주노총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서 지금까지 갈등과 대립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고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가보자라고 해서 위원장님이 오신 것 아니겠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보니까 이제 막 의제별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7월 20일을 전후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가동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오매불망 ‘민주노총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고 있지만 아까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 전교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서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다시 한번 결론은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앞으로 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이 꼭 들어와야 조선이나 자동차, 민주노총이 주력 노조로 있는……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참여를 시킬 계획이고……

○임이자 위원 그 ‘무슨 일이 있든’의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지난번에 19년 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까지는 왔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9부능선은 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는 7부능선 넘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9부능선입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이제 9부능선까지는 왔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민주노총이 하는 투쟁 방법들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2차 산업혁명 시대 때 그때 일어났던 투쟁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없어질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해서 실업대란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교육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 또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때 아닙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광주형 일자리 만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반대하고 있지요.

○임이자 위원 반대하고 있지요? 현대자동차 어디 소속입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임이자 위원 이것 보세요. 위원장님, 느끼는 것 없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야 될 핵심적 내용이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민주노총이 보이고 있는……

○**임이자 위원** 아니, 두 가지 해결 안 하면 안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전교조 문제 얘기해 보세요. 전교조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 국회에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9부능선을 넘어서 들어옵니까? 여기는 여만 있습니까, 야당도 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 과정을 충실히 밟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어떻게 충실히 밟으실 거예요? 그 충실히 밟을 방법이 됩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지금 현재는 전교조가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ILO 협약 관련된 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ILO 협약 비준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ILO 협약 비준에 대해서 어디까지 역할을 하실 겁니까? 지금 그 협약 중에서 두 가지 다 비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단결권에 대해서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것은 지금 노사 그리고 노동부가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사, 노동부가 제출하는 의견들을 종합하고 충실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나 국회에 제출드릴 계획입니다.

어쨌든 민주노총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회적 대화 안 오는 것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 못 하시면 위원장님이 물러나셔야지요. 사회적 대화를 잘 풀 수 있는 다른 위원장님이 오셔야지요. 언제까지 위원장님만 보

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동의드리고 또 전교조 문제나 이런 개별 사안과 연동해서 큰 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노총이 들어오도록, 저는 남북관계에만 CVID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8월 중에 논의해야 될 것들이 사회안전망 문제라든지 산업안전 관련 문제라든지 ILO 기본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민주노총이 지금 현재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를 책임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시간은 엄수하지만 질의는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언제든지 발언하실 수 있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마치고 2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강효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인 악영향은 경제학개론의 얘기입니다. 경제학 각론까지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2000년대 들어와서 연평균 8.6%인데 생산성이 지금 4.7%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 자꾸 밀어붙이니까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경제학원론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장관님께서 먼저 시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환노위에 처음 와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좀 공부해 봤습니다. 정말 너무 엉망인 조직이다, 제 느낌입니다.

지금 공익위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공익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공익위원으로 되

어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러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비공익위원입니까?

아니, 무슨 이름을 공익위원이라고 지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정부위원으로 고치세요.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공익위원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장관님, 대답해 주세요. 정부가 임명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저희가 각계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강효상 위원 글썄, 하여튼 정부가 임명하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런데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은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노총 민노총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정부위원, 소위 공익위원만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냥 친정부, 자기들 말 잘 듣는 어용 위원들을 갖다 뽑은 겁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정부의 뜻대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용 최저임금위원회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번에 봤지만 지금 국회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하는 마당에 정말 국민들의 컨센션스를 이루어야 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측 사람들이 다 퇴장한 가운데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원천무효예요, 원천무효. 위원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사용자위원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은 이런 것은 당연히 재심 사유고 지금 경총에서 이의제기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장관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자위원 9명도 저는 구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업 위주,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이 단체 추천 구성을 소상공인들에게도 개방해야 된다, 5인 이하 소상공인들에게도 반드시 그 이익을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구조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장관님,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에도 따르면 제발 업종별, 지역별 또 외국 같으면 연령별 이렇게 차등을 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호소인데 이것을 무슨 독재위원회처럼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자꾸 결정을 하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고 소상공인들이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는데요.

우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것을 좀 봅시다. 지금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영국, 다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법 제4조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취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될 터인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뿐만 아니라 저는 지역별 차등도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GRDP 한번 보십시오. 서울이 지금 1인당 3600만 원 정도인데 대구는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른 데도 한번 보세요. 강원도 제주도 전북 이런 데 낮지 않습니까? 인천 부산도 낮고요. 제가 보니까 대구가 제일 낮네요. 그러니까 좀 지역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맨해튼의 임금이 다르고 저 시골 오하이오주의 임금이 천양지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소득 차이가 나는데 왜 이것을 무시하는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지금이 무슨 5공화국입니까? 합리적인 주장, 호소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반영해서 고쳐야 될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연령도 그렇습니다. 지금 노령층 중에 최저임금 적용 안 돼도 7000원, 6000원이라도 일하시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왜 고용을 봉쇄하고 최저임금 안 지키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다 세금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세금 받는 사람으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도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학용 장관님, 답변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중복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1988년도에 생겼습니다. 31회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는데 노·사·공이 합해서 합의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차례를 빼 놓고는 어느 해는 사용자가 다 퇴장을 하고 어느 해는 노동자가 다 퇴장을 하고 표결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의 쏠림 현상 때문에 지금 야당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여당 하실 때는 또 야당에서 주장을 했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효상 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래서 지금 문제인 정부 들어서 2년 차 됐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 와서 국회에 법 개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정부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강효상 위원 장관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이 부분은 저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국회가 결정을 하든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립 현상이 되면 공익위원을 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갈등으로 가고, 이런 부분 논의가 안 되면 최저임금위원회를 열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업종별 차등 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업종별 차등 지급에 대해서 노·사·공 전부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공 말고 전문가 TF에서도 업종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가장 어려운 한계소비 계층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주다 보면 이 사람들의 급여를 주는 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업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나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등 지급하면 최저임금이 정말 지급이 돼야 될 계층에 최저임금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용 알겠습니다.

지금 2차 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신보라

위원님, 이용득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이렇게 앞으로 네 분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관님 말씀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면요.

공익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위 위원을 바꾸는 문제는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맞는데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입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의원입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된다면 이것은 꼭 우리 의원들만의 몫이 아니고 오히려 먼저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그 기준에 관해서도 저는 그 과정이 졸속이었다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열람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초 심의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서 심의자료를 공개했잖아요, 위원장님?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신보라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기초 심의자료,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네다섯 가지 지표를 지표별로 나눠서 심의한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위임금으로 소득분배율 기준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인지 평균임금을 기초자료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심의 관련 주요지표 중에 소득분배율 측면에……

여기 지금 업무 추진현황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심의자료 안에 소득분배율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기초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OECD도 물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을 함께 다루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한 결정 관련 참고자료에도 적혀 있지만 ‘OECD는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중위임금이 더 나은 기준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또 명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OECD에서는 중위임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중에 무엇을 최저임금의 논의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3페이지에는 그 결과를 전원회의에 6월 22일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2일에 보고할 당시에 이 두 가지를 다 다뤘지만 사실상 평균임금으로 갈 것이냐 중위임금으로 갈 것이냐의 결정을 하고 그것을 보고를 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한 팩트를 확인할게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그 부분에서 데이터는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중위가 아니고 평균임금으로 하자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신보라 위원 결정하지 않았지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그날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시면 노동계는 계속 평균임금을 얘기했고 사용자는 중위임금을 얘기했는데요.

저희들이 마지막 공익위원안을 만들 때 이번에는 하나의 안을 가지고 찬반이 아니고 노동계안과 공익위원안 간에 표결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저희들 공익위원의 합의된 안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임금격차 그리고 소득분배 격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가지는 왜곡성이 있다, 그래서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현재 임금노동자의 23% 이상이 저소득으로 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위임금이 가지는 단점이 있다 이런 논의가 공익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6월 22일에 보고할 당시에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을, 어떤 것으로 정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6월 22일 이후에 7월 14일에 가결안이 됐기 때문에 실은 한 달 사이에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전원회의가 있었지만, 저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마다 중위임금 기준으로 볼 것이냐 평균임금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노사 간에 여러 차례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신보라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익위원

들만의 결정으로 중위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실은 이런 갈등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매우 굉장히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지는 데요.

그러면 사실상 평균임금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한 것은 언제입니까?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그것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초반에 지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얘기할 것이냐라는 공익위원들의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7월 14일, 13일은 아니고 그것은 막판에…… 그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평균임금에 관련해서 한국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기에는 노동자위원이 들어오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사용자위원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공익위원들 간의 의견도 있겠지만 실은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가 최저임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지금도 저희가 정치임금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논의 구조에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중위임금으로 할 것이냐 평균임금으로 할 것이냐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인데 그것에 대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리고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도 거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가 임금이 결정이 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평균임금으로 정하게 되는, 오히려 결론을 내어 두고 그것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이냐 이렇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막판에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이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가 됐던 부분인데 만약에 사용자 측이 막판에, 초기부터 들어오고 했었으니까요. 계속 진행이 됐으면 노사의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율할 때 그런 제안을 하고 논의가 됐을 것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사용자위원이 빠진 것은 7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14일, 3일 사이예요, 3일 사이. 그러면 평균임금, 중위임금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 3일

사이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최저 임금 영향률, 미만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5%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이런 임금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는 기준을 결국은 3일 안에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공익위원들은 절대 3일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미 그전에 몇 주 전에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평균임금으로 가자는 것을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부분의 범위가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사용자위원 한쪽이 완전히 빠짐으로써 저희들 안을 내야 되는 상황이 3일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공익위원들은 바로 그때가 아니고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되었던 기준, 평균임금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임금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 편을 아예 들어주신 것이네요? 노동계가 평균 임금을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공익위원들은 이게 ‘노동계안’, ‘사용자안’ 이런 차원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한국의 소득분배의 특성이라든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중위 임금이 가지는 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 저도 아까 최저임금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현장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무진장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오해들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계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기업대표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 경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총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연합회라든가?

○이용득 위원 그것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 선진국은 안 그래요. 제 명함도 ‘노동은 경제다’, 하도 노동을 경제계로 봐 주지 않아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산업 선진국들은 경제계 하면 노와 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계만 어떻게 경제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들을 들어 보면 마치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임금 때문에, 노동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임금 자체가 경제입니다. 아까 이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최저임금, 저소득층의 임금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소비로 직결되지요. 그러니까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산업별 또는 어느 지역별로 차등을 주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랬더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오주하고 뉴욕하고 임금이 다르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도쿄 최저임금하고 오사카 최저임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부산 임금하고 서울 임금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들을 자꾸 비추는데 그 비추는 이유가 마치 노동자들의 임금, 특히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안 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바로 경제인인데 경제인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 그러면 됩니까?

저는 경제가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은행원 출신인데, 화폐가치 재창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내면 이게 수표가 됐든 카드가 됐든 몇 순배 돌면서 한국은행에서 찍어 낸 돈 가치의 몇 배의 가치 재창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0조나 되는 돈이 재벌 창고에 묶여 있어요. 그 1000조 중의 일부를 저소득층 지갑에 넣어 준다면 돈이 돕니다. 화폐가치 재창출이 됩니다.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 봐야지, 왜 노동자는 경제인의 한 축이면서도 경제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최저임금은 하되…… 어느 업종 최저임금은 올려야 되고 어느 업종 최저임금은 낮춰야 됩니까? 업종별 차등을 둔다? 대한

민국이 그게 가능한 나라입니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격차, 임금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득주도형 성장을 하겠다 이것이 이 정권의 방향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혁신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득주도형 성장은 안 된다’, 어제 장하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주체는 노와 사다, 그리고 돈이 돌도록 하려면 저소득층의 지갑을 채워 줘야 된다, 그래야 돈이 돈다는 이 가장 일반적인 경제논리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까 김동철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을과 병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을이 지금 못살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을들이 지금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씩 하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진짜 못 견디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대료라든가 또 프랜차이즈 업체의 수수료라든가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계부처들 간에 선조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임대료 같은 것 1년이면 700~800씩 되고 이거 1년에 한 사람당 100만 원인데 어떤 것 때문에 못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부처 장관입니다. 경제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부처 장관들끼리 김동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을의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최저임금의 인상은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고 또 가족들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가야 될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 저녁 가족들과 함께 넉넉한 삶을 살려면 근로시간도 단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시장에 맞게 조정이 계속 되어야 되고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데 도리어 어려운 근로자를 해고하게 하는 이런 정책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식당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전에 그동안 고용을 10명을 했는데 식당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경영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으면 4대 보험료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데 자부담도 또 있고,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청년들, 어렵게 공부하는 아르바이트생들 더 어렵게 하는, 자영업 하는 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중소기업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률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장의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업들이 1000조가 아니라 수천조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오죽하면 다 해외로 공장 설립하겠다고, 제가 아는 많은 기업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제 사업 그만해야겠다’고, ‘이런 험한 꼴 당하면서 더 이상 사업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규제를 혁파하고, 아까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 해야 되고요.

아까 지적한 것 맞습니다. 강효상 위원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공익위원이라는 표현도……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라고. 중재안이라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정부안을 통과시킨 것인데 그것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이렇게 결국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분들인데 정부안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제도를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은 아까 말씀대로 실패한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란

국민 세금 나눠 주기 정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가 촉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나잖아요. 줄고 있잖아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또 공기업, 공무원들 증원,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들 대폭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 주는 나라 지금 그런 나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자꾸 더 높아 가는 것이고, 왜? 가장 안정적인 공무원이 그나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가장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장밋빛 포퓰리즘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아까 편의점만 말씀했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어렵습니다. 도·소매업 다 어렵고 커피숍 사장님들, 편의점 사장님들, 병원도 어렵습니다. 숙박업, 아르바이트 학생들, 치킨집 사장, 배달업 사장님, 안 어려운 곳이 없어요.

결국 그런 부담이 국민들한테 가는데 정부가 내놓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임대료가 자꾸 높아져서 그렇다’, ‘카드수수료’ 이렇게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완전히 호도하는 얘기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임대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체인점 하는 회사들이 이윤을 많이 남겨서 그렇다, 그러면 편의점 사장님들한테 이윤을 많이 주면 결국은 가격을 올릴 것 아닙니까? 캔커피값도 올리고 편의점이 하는 모든 상품값을 올리게 될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부담은 국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결국 국민 부담, 세금으로 이런 엉터리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은 빨리 수정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 연말, 내년 초쯤에 정말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이 정부가 외면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단호하게 현장의 얘기들을 제대로 듣고 대통령께 제대로 건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안을 따라서 중재안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시장에 맞게 국

내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장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오늘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저보다 경제학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니까 제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9대 국회에서 2013년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장우 위원** 아니, 과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장우 위원** 그거 과거 설명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연 노동시간이 2050시간입니다. 독일은 1300시간입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배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시간이 길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연착륙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력근로나 이런 것 도입하기 위해서 6개월 계도기간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시면 그건 후조치거든요. 우선 그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정책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정책을 시행하는 거지 정책부터 시행하고 보완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안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소매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임대료입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임대료도 높고 카드수수료

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그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것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꼭 받아야 되는 분 1분위, 2분위의 소득계층은 임금만이 소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이 너무 낮아서 정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보전을 해 주는 거고 그 보전으로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문성현 위원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돈은 돌고 돌아야 되고 돈이 돌고 돌므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잠자는 돈 1000억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잠자는 돈 1000억이 나오려고 한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 좋지요. 일자리를 통해서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시장에 의해서 임금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뿌듯하고 좋지요. 그렇게 하려면 일자리도 많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성장을 통해서 복지도 하고 성장을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혁신성장도 마찬가지고요—우리가 여기서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노동계 출신으로서 이런 얘기 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우리가 회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작정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

동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두텁게 보호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대못질을 하는 경직성이 아닌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에 투자도 활성화되고…… 기업은 무조건 이익이 나야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노사 신뢰가 쌓이는 노사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문성현 위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십시오. 아직도 갈등, 대립……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혁신성장을 이루었을 때, 혁신이라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 낼 수 있는 신성장산업이 돌아가든지 이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먼저 다느냐라는 거지 노동유연성 피해 갈 수가 없는 것 확실하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맞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민주노총이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게 되면 저는 협력적 관계라든가 상생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대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인 ILO 협약 비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ILO 가입하고 나서 ILO 협약 비준이 안 된 것이 4개 조항이 있지요, 그렇지요? 단결권 관련된 것하고 강제조항, 이게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나중에 즉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보니까 의제별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7월 20일 날 회의도 했고 지금 한다면 서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임이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ILO를 가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것을 비준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가장 대표적으로 전교조 문제나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서 사실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노동자들은 완전한 3권을 요구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그것은 어렵다,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많은 해고자들이 생겼고요.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또 그런 점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그 점 역시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노사가 굉장히 상생적인, 협력적인 신뢰에 바탕해서 이렇게 갔을 때 이게 가능한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반드시 ILO 협약과 지금 현재 우리 국내법과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법을 우선적으로 먼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 할지라도 법안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동의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계속 저렇게 나가면, 저런 행태를 계속적으로 보여 주게 되면 국민들도 실망감이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광주의 대부분 평균 임금이 2500만 원을 밑돈다고 해요. 그러면 광주에서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해서 독일까지 가서 폭스바겐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같이 잘살아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더불어서.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 뺏길까 봐, 임금이 하향 조정될까 봐 그 기득권을 지금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동운동을 전개해 가시는 분들이 민주노총인데 어떻게 이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제가 상징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노동운동이 이렇게 격차를 확대시키고 구조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거였다면 노동운동 안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생 평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남은 과제는 이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가 제 남은 삶의 목표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민주노총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문제가 아니고……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같이 구조조정을 극복해야 되는 노사관계가 극단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보더라도 전망이 없는 회사에서는 우리 노동자들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고 너무나 격차가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 정말로 해고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구조조정이 가능하려면 뭔가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이 독점한 것도 있지만 노조도 30년 역사 속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민주노총에게 호소질은 목소리로 상생적·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정의라고 생각하고 노조를 열심히 했지만 지나 놓고 보니까 꼭 정의가 아닌 부분이 있었다, 거기에 민주노총도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관행으로부터 이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민주노총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3차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신 분은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이자 위원님, 3차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효상, 신보라, 이용득, 임이자 이렇게 네 분이 3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효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학용 예, 말씀하십시오.

○강효상 위원 제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질의시간에서 좀 빼 주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이것 한 20~30초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강효상 위원 영상부터 한번 틀어 주시지요. JTBC 뉴스인데요.

(영상자료 상영)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그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흔히 보수 종편이 아니고 JTBC의 이런 걱정스러운 보도인데요. 지금 항간에는 근로자들, 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저녁밥은 없는 삶을 제공하고 있는 꼴입니다.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을 제공하고 있는 격이네요.

장관님께서 계속 어떤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자꾸 임대료, 카드수수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거 CF의 ‘결론은 버킹검’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도 그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최저임금제도의 주무 장관으로서 이것이 지나치지 않은지 과도하지 않은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발 드립니다.

서민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고 이것을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고 정확한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정책은 몽상에 불과하다, 유토피아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이번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변화를 했는데요, 2020년까지 지금 최대 33만 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

는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정말 이 결과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런 경제전문가나 연구소에서 한 예측들이 거의 다 들어맞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허약한 체질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경제에다가 막 임금 올리고 시간 단축하고 이런 유토피아적인 처방을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병을 더 악화시키는 거라는 이런 충고와 충언을 제발 새겨들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여쭙는데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지금 경제부총리와 홍영표 원내대표조차도 6개월로 늘리자고 하셨는데 장관님, 반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산업별로 구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해결책을,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준비기간 동안에 3627개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다 조사를 했을 때 60%는 이미 52시간 내에 있어서 더 이상 추가근로가 필요 없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IT 업종이라든가 계절산업, 수출업체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3개월의 탄력근로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왔는데 6개월 제도기간 동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업종별·산업별로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효상 위원 좀 서둘러 주십시오. 2020년 말까지 하겠다 이것을 좀 서둘러 주시고요, 장관님 재임기간 중에 손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까지 고용대란이 현실화되면 정말 장관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발 따뜻한 가슴, 이상적인 발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는 그런 정책을 제발 좀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다음에 하십시오.

○강효상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까 답변 달라 그러셔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서 부대의견,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2022년으로 합의를 해 주신 것이고, 저희 정부에서 2022년까지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금년 말까지, 탄력근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6개월 정도기간 동안 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는 것을 앞당겨서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이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업종에서 어려움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300인 이상 업종에. 여기가 원래 특례업종이었는데 특례업종을 푼 것도 보통 11시간에서 13시간 과로해서 졸음운전을 해서 대형사고가 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례업종에서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특례업종은 내년 7월 1일이지만 금년에 52시간까지 준수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까 JTBC에 나왔던 투잡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임금이 손실됐을 때는 정부가 노동자에게 4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신규로 일자리를 채용할 때는 기업에 1인당 8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정하는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논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2022년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강효상 위원** 빨리 당겨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그것 여당위원들이 절대 반대하는데요.

다음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청년일자리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어쨌든 2018년에도 20% 이상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뒤로 넘겨 보시면 여러 청년일자에 관련한 상황도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올해 5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만 7000명이 늘어난 25만 3000명, 그런데 이 통계가 2004년 이후 가장 높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질 좋은 상용 일자리, 상용직에도 1년 계약기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일자리라고 딱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질 좋은 일자리로 가기보다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형국의 지표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14만 6000명인데 이것도 5월 기준으로 보면 1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아까 입직기간도 논의가 됐었지만 11개월이 넘는 입직기간도 최장 기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월 20일 업무보고 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3·15 대책이 나왔을 때였기 때문에 그 대책의 원인 분석을 보면 굉장히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다고 진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해법은 단기적 지원에 너무 그쳐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조 개선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3대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도 2017년 집행 부진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집행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달라고 장관께서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7년에도 53.2%, 35.8%, 55.4% 이렇게 됐을 때 추경 편성이라 할지 이런 게 너무 늦게 됐었고, 그래서 집행하는 데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 상반기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다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촉진수당도 추경은 여기서는 빠졌는데 43.25%,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경까지 포함을 하니까 6.17%밖에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상반기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집행을 채우는 부분도 저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우선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집행률이. 이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했지만 저희가 집행이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지켜봐 달라, 청년실업이 악화

됐다고 지적을 하면 특단의 대책으로 예산을 더 주시라 이게 저는 그냥 쳇바퀴 돌듯 몇 년간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제가 청년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장관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물론 추경이 늦게 됐기 때문에 추경 집행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할 수 있어도 본예산 집행까지도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내일채움공제가 본예산 대비 38.24%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4월에 예산에 5만 명을 했는데 5만 명이 다 신청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추경을 했는데 왜 집행은 이렇게 늦느냐, 여기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든가 부정신청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산으로, 기업들이 이것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는 굉장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상반기는 이미 100% 다 인원 채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경은 6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까 목표 인원에 대해서 11만 명을 했는데 64%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 위원 신청이 64%라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신청이요.

그래서 신청이 이렇게 돼 있고, 7월 현재는 7만 314명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11만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내일채움공제는 저희가 예산을 쓰는 데는 올해는 작년같이 추경이 늦게 잡히고 불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추가고용장려금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런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정말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설계할 때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1명 채용하기도 어려운데 2명을 채용해야 1명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설

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10%도 진행이 안 됩니다.

○신보라 위원 이번에 수정을 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6월 1일, 6월부터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이후에 평상시에 1일 평균 10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 7월 한 달 동안에요. 1월부터 5월까지 5913명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7월 20일 현재까지 1만 8084명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도 또 부정수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6월하고, 1월 달부터 하면 6월 한 달이 1월부터 5월까지보다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주신 예산 불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저희가 제도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라고 대는 것들이 늘 집행 부진을 면치 못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예가 적지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부분을 6개월 연장한다는 부분에서 장관님하고 좀 입장이 달랐던 것 같고, 그런데 오늘도 그 얘기가 몇 차례 나왔는데 장관이기 이전에 저희 당 국회의원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홍영표 원내대표의 그 얘기가 당론이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6개월은 무조건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용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론도 아니고 무조건 꼭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빌미를 줬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용득 위원 아니, 제가 할 얘기가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다음에 최저임금 부분은 말 그대로 그 취지가 최저임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 전반에 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임대료 부분이나 카드수수료 부분이나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최저임금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혼선이 되겠습니까? 경제라는 것은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임대료나 이렇게 시장의 요소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대가, 제가 공부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3대 요소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 소득 격차, 양극화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 하물며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전반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소득주도형의 경제성장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 모든 국회의원들도, 하다못해 원내대표도 뭔가 이견도 있고 이 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 이견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까 봐 또 추가질의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때문에 커피값이 오르는데 그게 소비자 부담으로 간다? 이게 시장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시장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누구와 누구 간에? 수박이 비싸지면 2통 사 먹을 것 1통 사 먹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안 팔리면 수박값이 내려가는 거고, 시장에서 가격 형성되는 겁니다. 임대료 올리는 게 다 소비자 부담으로 가고 이런 논리는 정말 경제 부분에서 너무 소비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경제정책 전반을 뿌리째 흔드는……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산업 선진국의 노사가 겪었던 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최저임금, 양극화 문제를 가지고 시장 전체의 문제, 경제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들고 그 경제 정책을 흔들면, 정말 4차 산업혁명에서는 체질 변화가 필요하고 체질 강화가 필요한 건데 허약한 체질, 1·2·3차 산업혁명도 겪어 보지 못한 허약한 체질 그대로 가자?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체질 강화를 해야 되고 체질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작은 문제들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 지금 연연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양극화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전체 국가 경제적 문제로 커지는 데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요.

(임이자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부분은요 매 정권마다 그랬어요. 제가 노동운동을 오래 해서 그런데 이 정권의 어용 아니냐…… 공익위원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류장수 최심위원장님?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최심위 체도를 바꾸자 하는 것 아닌 다음에는 공익위원 선정도 너무 이 정권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매도당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년 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13만 3000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이 됐다고 했지요?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결정이 된 상황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한번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사진 좀 보여 주세요.

방금 보신 영상이 산하기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잡월드라고 화면에 나와 있네요.

○임이자 위원 잡월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잡월드가 협력 회사를 통해 갖고 정규직화하는, 잡월드가 거의 위탁을 줘서 위탁 회사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비정규직으로 있었는데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로 전환시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자회사의 정규직이지요.

○**임이자 위원** 정규직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불합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루에 한 2500명의 어린이들이 잡월드를 오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있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텐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잡월드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시간 좀……

여기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잡월드 이사장 노경란입니다.

○**임이자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지금 신고 집회 되어 있지 않은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키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경찰 신고나 설득을 통해서 집회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내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화와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조속하게 2차 컨설팅 진행하면서 노사정협의회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6월 7일 날 취임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하긴 했지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예,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인원이 제일 많이 있는 서울랜드에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동의하지 않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275명입니다.

○**임이자 위원** 전체 중에서 몇 % 되지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338명 중에 275명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명이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지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그 노조에 지금 가입해 있는 인원은 1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과반은 되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직고용 안 해 주면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제가 6월 7일 날 취임한 이래로 네 차례에 걸쳐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했고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열 차례에 걸쳐서 노사정협의회가 있었고요. 그 노사정협의회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노사가 함께 도출한 결과를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임이자 위원** 도출한 결과가 뭔데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자회사로 전환 방식을 하는 것에……

○**임이자 위원** 싫다잖아요. 안 간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들이 계속 와서, 직업에 대해서 알려고 왔는데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노사 간의 갈등 대립을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물론 자기 권리를 찾는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여기는. 다른 산하기관보다는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예.

○**임이자 위원**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월드 같은 경우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 4월 5일에 이미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이것을 자회사로 해서 정규직으로 한다가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의결권을 가진 18명 중에 16명이 찬성을 하고 단 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나와서 9명 중에 2명만 반대한 건데, 정말 일부가 이런 부분이었고요.

제가 작년에 잡월드를 갔을 때 서울랜드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심각한 것을 발견

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랜드는 자회사로 가서 인건비 많이 주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승계하고 승계해서 2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아직도 급여가 1800만원, 2000만 원 받는 아주 나쁜 구조가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이 오는데 집회 신고도 안 해 놓고, 이걸 실내기 때문에 집회도 할 수도 없는 곳으로 화면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가 한번 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다수에 의해서 합의된 것을 일부가 나서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임이자 위원 불법이라면서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한번 실태조사해 보고요. 이것은 당연히 단호하게 하는데 앞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수의 서울랜드 직원들은 고용위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자회사의 정규직이 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니라 살펴보고 보고서를 위원님 방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4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장관님께 우선 간단한 질문을 여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주당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걸 법 개정 사항입니다. 저는 벌금까지는 좋지만 외국에도 유례가 드문 이런 형사처벌 규정은 과도한 처벌이고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 개정 사항이지만 장관님 개인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체불임금 하는 사업장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고발하거나 한 번에 법 집행을 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주고 거기에 대한 정부 대출을 하는 등 거의……

○강효상 위원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엄격하게 하고……

○강효상 위원 아니, 임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지요. 이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최저임금법 위반일 경우에, 위원님 시간 없으시니까 제가 이것 나중에 보고를……

○강효상 위원 제 자료하고 다른 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인도 순방 중에 삼성이 투자한 공장을 방문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저는 그때 대통령께……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준공식이나 투자하는 데 가서 격려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경우에 가는 겁니다. 자기 나라 일자리를 뺏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러 가는데 거기 가서 박수 치고 격려하는 것,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굉장히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대통령께서 인도까지 가서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독대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장관님, 대통령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질의시간이 얼마 없으시니까 질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삼성 측에 군산지역에 투자해 달라고 종용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 있습니다, GM 떠난 빈자리에.

저는 대통령께서 국내 대기업에게,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에 국내에 투자해 달라 일자리 창

출해 달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첫째,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왜 특정 지역만, 그것도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거기만 투자하라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 언급이 없으셨나 저는 그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독대의 방법도 문제입니다. 그 워딩이, 대통령이 재벌 총수하고 한 얘기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공개적으로 되어야지 사람들이 '혹시라도 과거 박근혜정부 때처럼 무슨 뒷거래가 없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오해를 안 할 텐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 재판이 걸려 있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이것은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청와대에 분명히 말씀하셔서 항간의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공개하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후보 때 '재벌총수와는 만나겠지만 독대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비공개로 불투명하게 대화는 하지 않겠다, 그 말씀으로 저희가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인도까지 가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군산에 투자하라고 했는지 부산에 투자하라고 했는지 대구에 투자하라고 했는지 강원도에 투자하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벌과의 정경유착과 뒷거래 의혹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대통령께서 인도를 다녀오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존도가 중국에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규제도 많고 수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데 중국보다 더 큰 신남방 아시아 국가에서 인도가 가장 경제규모가 커질 수 있는 국가기 때문에 인도하고의 경제무역 관계 때문에 인도를 국민방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하고는 언론에서 모든 게 보도됐지만 공개적으로 만난 게 잠깐 어디 갔었다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잠깐 시간이 맞으셨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한국에도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십시오', 어떤 특정 지역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인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그 나라에 기여를 하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제교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차원에서 갔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노동자 편들고 기업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혁신성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규제도 풀고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면 가서 격려도 하고 또 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한 MOU를 굉장히 많이 맺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효상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언론 보도를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몇 분 만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부인하시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몇 분 만난 것은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강효상 위원 고용노동부 간부께서 기사를 뽑아 드리세요. 공개적인 자리도 있었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강효상 위원 따로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5분이면 어떤 얘기든지 다 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확인을 해 보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장소에……

○위원장 김학용 장관님,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답변 계속하시고요.

강효상 위원님, 부족한 것은 또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군산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군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군산 얘기요?

○강효상 위원 예, 조선일보에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조선일보가 틀렸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도에 투자했듯이 우리 국내에도 투자를 많이 해 줘라' 하는 의미로, 저도 그것은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인도를 순방하신 이유, 이제는 아시아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남방 국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강효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산에 대해서 투자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언론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제가 파악을 했지 전혀……

○강효상 위원 확인은 안 하셨다?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문성현 위원장님께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노사정위원회의 청년고용협의회에서 한번 활동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의 참여를 일정 정도 할당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이해당사자들 중에서도 청년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사정위원회법을 이번에 개정하면서도 실은 청년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일부 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그 의제별 위원회에 청년위원 딱 1명 들어갔어요. 너무 구색 맞추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런데 적은 게 아니고 전체 8명 중에 1명이고, 그래서 그 비중은 경총회장님과 맞먹는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의제별 위원회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제별 위원회가 지금 4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노동계는 다 한국노총 위원분들이 중복적으로 참석을 하시는데 청년위원 딱 1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청년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좀 논의되어야 되는데 거의 청년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신보라 위원 아니, 의제별 위원회요, 위원장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러니까 의제별 위원회 위원은 청년들 중심으로 될 겁니다. 아직

까지 몇 명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니, 지금 의제별 위원회, ‘사회안전망’ ‘산업안전보건’ ‘노동의 미래’ ‘노사관계’ 여기에 딱 하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만 청년위원 딱 1명 들어갔으니 너무 구색 맞추기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신보라 위원 두 번째로 업종별 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노동계가 제기한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어렵습니다.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해운’ ‘버스운송’ 이렇게 나눈 것 보니까 실은 노조가 조직된 업종 중심으로만 짜여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다시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급 위원회 위촉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사회 각 계층 관련한 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거기에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이것을 양대 노총만 위원 추천을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지금은 그렇게……

○신보라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현재는 양대 노총만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회의 수준에서. 현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모든 청년단체, 여성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하면……

○신보라 위원 그런데 저는 양대 노총이 참여단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 자체가 편향적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청년·여성·비정규직, 사회 각계각층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만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게 아니에요. 청년도 노동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습니다. 청년 벤처를 하는 분들도 있고 직접

자영업을 뛰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을 일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위원을, 양대 노총이 협의해서 참여 단체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노동계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지요. 이 부분도 저는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반영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검토 사안에 대해서 논의·검토한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특별히 신보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이든지 미래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청년들의 각계 위원회의 주도적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다, 광주형 일자리마저도 청년들의 발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오늘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많이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EITC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께……

우선 EITC 확장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찬성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EITC와 일자리안정자금 좀 다른 트랙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경로가 다를 뿐이지 목표는 비슷합니다. 소득분배를 개선하자 그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희 한국당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 질의니까 1분만 추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질의 안 하시는 조건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결국 영세사업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을 쓰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가계소득,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효과를 내기 위해서 EITC를 쓰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안정자금의 그 자금까지도 EITC로 아예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ITC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하고요.

저는 그것이 시장임금에 왜곡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장의 외부효과라고 하는 부분, 소득격차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 측면

에서 EITC로 보전하는 방안이 보다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EITC 확대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EITC를 확대해야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듭니다. 본인이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다는 거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그래서 EITC, 국세청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후불제 성격이 있는데다가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여러 가지 장단점 때문에 작년에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EITC를 많이 확대하고……

지금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 올해는 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EITC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쪽을 정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더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못 하게 해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갈할지도 모르는 고용보험기금을 막 퍼 쓰는 데 대해서 지적 좀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우리 고용보험기금 관련해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법정적립금이 몇 배인지 아시지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법정적립금을 몇 배 적립해 놓아야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1.5에서 1.6……

○**임이자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제가 영어로 질의하나요?

지금 우리 고용보험기금 중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법정적립금을 몇 배로 해 놓아야 되는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1.5에서 2.2%로 된다고……

○**임이자 위원** 그것은 실업급여 계정이고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1배에서 1.5배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1~1.5배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금 배율 현황을

보게 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이 1.4니까 어느 정도 법정적립금이 충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실업급여를 보면 0.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법정적립금으로 한다면 얼마를 적립해 놓아야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실업급여가 0.9인데 1.5에서 2.2면 0.6에서 1.3이, 많이 부족하네요. 부족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장관님 계산기 갖다 드려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납입요율은 0.3%에서 시작해서 지금 0.65%까지, 실업급여 관련돼 가지고는 0.65%, 0.65% 노사가 내고 있는 거고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관련돼 가지고는 0.25%에서 0.85% 내고 있어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고용보험기금 고갈 추이’라고 해서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작년 3월 7일 날 발표한 것인데, 보게 되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되면 벌써 문제가 생기고요. 고용안정기금 관련돼 가지고도 이미 작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임이자 위원 이 상태로 2025년도에 가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없지요? 고갈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 보게 되면 고용보험 관련돼 가지고 청년내일채움도, 물론 이것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안정·직능개발 계정에서 막 나가고 있습니다. 2087억 정도, 물론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신규사업이 전부 다 특 하면 뭐든지 고용안정·직능 계정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작년 국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모성보호기금을 일정 부분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이 지금 국회에 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 지금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모성보호급여가 지금 1조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로는 지금 900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보면 저출산대책사업,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보게 되면 특고 노동자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50만 원씩 해 가지고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해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고용보험 쪽으로 넘겨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참 형평에 안 맞는 정책 아니에요?

우리 일하는 노동자, 여성들도 취약계층은 있는데 이분들은 고용보험을 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는 골프장 캐디도 있고 학습지 교사도 있고 보험설계사도 있고, 이분들은 고액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분도 고용보험도 안 내고 일반회계로 준단 말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만 모든 사업들은 ‘신규사업’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용보험에서 노사 간의 기금을, 실업급여를 늘려 줄 생각은 안 하고 이 부분 가지고……

○위원장 김학용 1분 더 드려요.

○임이자 위원 놀려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오고,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저도 공감을……

○임이자 위원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에 적자 전환되고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아주 고갈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저출산 거기에 일반회계로 30% 해 달라는 게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성보호기금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이 바쁘시니까 저도 말이 자꾸만 꼬입니다.

특고 노동자가 고용보험을 안 든 부분에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고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계층의 저

임금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니까 그들은 출산하지 않습니다. 사실 50만 원 갖고도 출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책이라도 써서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을 내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못 쓰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용보험에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는 것을 저희도 요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시간 더 안 주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 장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그 한 장 남은 것은 다음 회의 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보험기금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용보험기금으로 8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용보험기금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이 저기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반회계로,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김학용** 마이크 드려요.

○**임이자 위원** 취약계층 취업 촉진 사업,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 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그다음에 중장년층 취업지원 이런 부분들은 고용기금에서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고용보험 목적과 다른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로 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꼭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문진국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오늘 회의의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 과약이 덜 되셨을 텐데도 열성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회의가 많이 부족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진전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또 어려운 분들의 고단한 삶을 덜어 주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모든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일들이 시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모두가 다 최저임금만의, 근로시간 단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보완책을 신속히 내놓거나 이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지 그저 막연하게 공약을 지킨다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로서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경제학도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소위 자본주의경제는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일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이고 이런 것을 건드리게 되면 경제 생태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다른 부작용으로 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보완하는 것은 아주 만부득이한 경우에 한시적이어야지 이것이 지속적인 것은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대단히 옳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다녀왔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잘못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률이 초침예하게 당사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익위원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나, 이것도 현재 우리 위원회에 법안이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고용노동부와 우리 환노위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회의에 성실하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관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효상 김동철 김태년 김학용
문진국 설훈 송옥주 신보라
윤호중 이상돈 이용득 이장우
임이자 전현희 한정애

○청가 위원(1인)

이정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 송주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차관 이성기
기획조정실장 박화진
고용정책실장 임서정
노동정책실장 안경덕
노동시장정책관 박성희
고용서비스정책관 권혁태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영국
노사협력정책관 김민석
근로기준정책관 김왕

공공노사정책관 류경희
신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정책기획관 선우정택
국제협력관 김대환
대변인 이현수
감사관 박준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정형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정지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영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명로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장 윤현덕
고용보험심사위원장 송문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홍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이석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김기영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인선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운영국장 시민석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준성
사무처장 이수영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태년 설훈 송옥주 윤호중 이용득 전현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2018.7.16.
강효상 김학용 문진국 신보라 이장우 임이자	자유한국당	
김동철 이상돈	바른미래당	
이정미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의안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송옥주 · 이용득 · 박선숙 · 김중로 · 소병훈 · 유동수 · 박정 · 표창원 · 한정애 · 이정미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송옥주 · 이용득 · 박선숙 · 김중로 · 소병훈 · 유동수 · 박정 · 표창원 · 한정애 · 이정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4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8. 5. 24. 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중회 · 김종대 · 박용진 · 조배숙 · 천정배 · 김광수 · 장정숙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8. 5. 24. 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중회 · 김종대 · 박용진 · 조배숙 · 김광수 · 장정숙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4. 어기구 · 김한정 · 안호영 · 정재호 · 서영교 · 조승래 · 윤후덕 · 위성곤 · 김철민 · 박정 · 송기현 · 신창현 · 김병기 · 이용득 · 설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5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5. 윤후덕 · 이수혁 · 백재현 · 고용진 · 안호영 · 박정 · 한정애 · 어기구 · 이찬열 · 송기현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5. 25. 채이배 · 신용현 · 이학재 · 박주민 · 박범계 · 천정배 · 권은희 · 하태경 · 김중로 · 박선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8일 회부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28. 박인숙 · 김성원 · 김석기 · 정진석 · 강석진 · 유동수 · 김세연 · 윤종필 · 이균현 · 김용태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8. 이명수 · 김재원 · 박인숙 · 강석진 · 홍철호 · 광대훈 · 박순자 · 강석호 · 장제원 · 김상훈 · 유민봉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9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8. 5. 30. 신보라 · 송희경 · 조훈현 · 장석춘 · 김학용 · 박명재 · 백승주 · 김성원 · 민경욱 · 주광덕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8. 5. 30. 주승용 · 이찬열 · 김수민 · 윤영일 · 이용호 · 김관영 · 이개호 · 강창일 · 최도자 · 이동섭 · 김삼화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8. 5. 31. 신보라 · 송희경 · 조훈현 · 장석춘 · 김학용 · 박명재 · 백승주 · 김성원 · 민경욱 · 주광덕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5. 31. 김정재 · 박명재 · 민경욱 · 박완수 · 광대훈 · 임이자 · 이은권 · 정갑윤 · 김석기 · 박대출 · 광상도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8. 6. 5. 윤후덕 · 이수혁 · 박정 · 안호영 · 문희상 · 김병기 · 이찬열 · 표창원 · 김경협 · 이인영 의원 발의)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8. 6. 5. 송희경 · 신보라 · 박인숙 · 김무성 · 이은권 · 성일중 · 김태흠 · 추경호 · 박순자 · 민경욱 · 강석진 · 김정재 · 김광림 · 정갑윤 · 김승희 · 김성원 · 김세연 · 임이자 · 원유철 · 문진국 · 김석기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8. 6. 11. 이상돈 · 권칠승 · 윤영일 · 장정숙 · 박영선 · 박주현 · 문진국 · 조배숙 · 유승희 · 송옥주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8. 6. 15. 이수혁 · 홍영표 · 박정 · 심재관 · 문희상 · 윤후덕 · 권칠승 · 안호영 · 신창현 · 송옥주 · 안규백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 발의)

(2018. 6. 15. 이수혁 · 홍영표 · 박정 · 심재권 · 문희상 · 윤후덕 · 권칠승 · 안호영 · 신창현 · 송옥주 · 안규백 의원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 발의)

(2018. 6. 15. 이수혁 · 홍영표 · 박정 · 심재권 · 문희상 · 윤후덕 · 권칠승 · 안호영 · 신창현 · 송옥주 · 안규백 의원 발의)

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6. 15. 권칠승 · 이찬열 · 박정 · 고용진 · 황주홍 · 황희 · 이춘석 · 신창현 · 이수혁 · 신경민 · 위성곤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6. 20. 이찬열 · 황주홍 · 최도자 · 이동섭 · 김수민 · 유성엽 · 위성곤 · 윤후덕 · 채이배 · 권칠승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8. 6. 21. 조배숙 · 황주홍 · 윤영일 · 신용현 · 김광수 · 장정숙 · 이정미 · 김상희 · 손금주 · 천정배 · 박주민 · 장병완 · 김경진 의원 발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6. 22. 박광온 · 김해영 · 김현권 · 백혜련 · 김영진 · 이춘석 · 안민석 · 전현희 · 권칠승 · 이학영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8. 6. 25. 정인화 · 이찬열 · 이동섭 · 윤영일 · 장정숙 · 박명재 · 홍문표 · 설훈 · 유성엽 · 장병완 의원 발의)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018. 6. 26. 함진규 · 김성원 · 주광덕 · 金成泰 · 김정재 · 송희경 · 성일종 · 이양수 · 장석춘 · 이명수 의원 발의)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6. 26. 인재근 · 김상희 · 이인영 · 송갑석 · 김영진 · 유은혜 · 기동민 · 이규희 · 신경민 · 윤소하 · 오영훈 · 소병훈 · 윤관석 의원 발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6. 26. 박광온 · 김해영 · 김현권 · 백혜련 · 김영진 · 이춘석 · 안민석 · 전현희 · 권칠승 · 이학영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6. 26. 송옥주 · 강훈식 · 권칠승 · 김성수 ·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제윤경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 발의)

(2018. 6. 26. 이수혁 · 윤관석 · 윤후덕 · 권칠승 · 박정 · 신창현 · 강훈식 · 안규백 · 송갑석 · 윤호중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6. 27. 이찬열 · 황주홍 · 최도자 · 이동섭 · 김수민 · 유성엽 · 위성곤 · 윤후덕 · 채이배 · 권칠승 의원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6. 28. 이명수 · 박인숙 · 이정현 · 성일종 · 강석진 · 경대수 · 함진규 · 김기선 · 김명연 · 최연혜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6. 29. 임이자 · 김성원 · 함진규 · 윤영일 · 광상도 · 장석춘 · 성일종 · 송희경 · 홍문종 · 김성찬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6. 29. 김영호 · 안규백 · 신창현 · 기동민 · 윤후덕 · 이철희 · 유동수 · 김현권 · 변재일 · 박경미 의원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6. 29. 임이자 · 문진국 · 김한표 · 함진규 · 이명수 · 윤영일 · 원유철 · 광상도 · 장석춘 · 성일종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6. 29. 임이자 · 홍문종 · 윤종필 · 장석춘 · 문진국 · 함진규 · 김삼화 · 심재철 · 원유철 · 안상수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6. 29. 임이자·함진규·윤영일·金成泰·
원유철·김성찬·곽상도·장석춘·김한표·
이철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8. 6. 29. 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상희·
김성수·김영진·김종민·김태년·박광온·
박재호·서형수·이수혁·진선미·최운열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6. 29. 김삼화·이찬열·오세정·신용현·
채이배·이혜훈·김성식·김중로·정운천·
주승용·김종희·이동섭 의원 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7. 2. 김삼화·신용현·이찬열·김수민·
김중로·채이배·김관영·이동섭·최도자·
김종희·박선숙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7. 2. 김삼화·이찬열·오세정·신용현·
김중로·채이배·김관영·이동섭·이태규·
박선숙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7. 2. 김삼화·신용현·이찬열·김중로·
최도자·채이배·김관영·이동섭·유의동·
김종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 이학재·이동섭·권은희·이찬열·
엄용수·이언주·김중로·홍철호·조정식·
신상진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 임이자·함진규·홍문중·윤종필·
장석춘·문진국·조훈현·원유철·정갑윤·
김정재 의원 발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정진석·곽대훈·경대수·김상훈·
김석기·문진국·박명재·박완수·박인숙·

이정현·이종배·이철규·홍철호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장병완·황주홍·이용주·정인화·
윤영일·김종희·장정숙·박주현·김경진·
조배숙·박지원·유성엽·김광수·윤소하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3. 김광수·이동섭·김종희·윤소하·
조배숙·박선숙·정성호·김중로·김삼화·
김경진·천정배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
발의)

(2018. 7. 3. 정진석·박덕흠·김석기·곽대훈·
원유철·이종배·송언석·박인숙·김상훈·
최연혜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7. 5. 황주홍·김종희·이찬열·위성곤·
권칠승·조배숙·이학재·천정배·유성엽·
윤영일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7. 5. 황주홍·위성곤·이찬열·권칠승·
이학재·조배숙·천정배·윤영일·김종희·
유성엽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7. 5. 권은희·박선숙·김중로·하태경·
채이배·이동섭·김삼화·김수민·오세정·
이학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7. 6. 추경호·이채익·김상훈·김선동·
조경태·박덕흠·박명재·송희경·정종섭·
김광립·이종배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7. 9. 추경호·곽대훈·송언석·김선동·
김광립·정갑윤·조경태·이종명·박명재·
주호영·김정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8. 7. 9. 한정애·고용진·권미혁·김철민·

박주민 · 송옥주 · 신창현 · 윤후덕 · 진선미 ·
홍의락 의원 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7. 9. 송옥주 · 송갑석 · 김성수 · 박찬대 ·
신경민 · 김경협 · 진선미 · 안호영 · 유동수 ·
이수혁 · 윤후덕 · 이정미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7. 9. 송옥주 · 송갑석 · 김성수 · 고용진 ·
박찬대 · 김병기 · 신경민 · 김경협 · 진선미 ·
안호영 · 유동수 · 이수혁 · 유승희 · 윤후덕 ·
이정미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8. 7. 9. 신보라 · 박명재 · 이철규 · 추경호 ·
강석진 · 이종배 · 정유섭 · 송희경 · 홍일표 ·
강길부 · 하태경 · 이완영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7. 9. 황주홍 · 김광수 · 이찬열 · 장정숙 ·
윤영일 · 김경진 · 정인화 · 정동영 · 장병완 ·
박주민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0. 송옥주 · 강훈식 · 권칠승 · 김성수 ·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제윤경 의원 발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7. 10. 송옥주 · 김경협 · 노웅래 · 민병두 ·
송기현 · 신창현 · 안규백 · 윤후덕 · 이정미 ·
이찬열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0. 이찬열 · 황주홍 · 최도자 · 이동섭 ·
김수민 · 유성엽 · 위성곤 · 윤후덕 · 권칠승 ·
김삼화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7. 10. 임이자 · 김정재 · 정갑윤 · 장석준 ·
홍문종 · 문진국 · 정유섭 · 윤영일 · 김성원 ·
김명연 의원 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8. 7. 11. 어기구 · 심재권 · 박정 · 이훈 ·
노웅래 · 안민석 · 이개호 · 임종성 · 김현권 ·
안호영 · 위성곤 · 최운열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2. 김삼화 · 이찬열 · 김수민 · 박선숙 ·
오세정 · 신용현 · 하태경 · 손금주 · 채이배 ·
유의동 · 김종희 · 이태규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2. 김삼화 · 이찬열 · 김수민 · 박선숙 ·
오세정 · 신용현 · 하태경 · 손금주 · 채이배 ·
유의동 · 김종희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2. 추경호 · 이채익 · 광대훈 · 김상훈 ·
김광림 · 박명재 · 김선동 · 강석호 · 조경태 ·
엄용수 · 박성중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8. 7. 12. 장정숙 · 박주현 · 전혜숙 · 정인화 ·
천정배 · 김광수 · 이정미 · 장병완 · 노웅래 ·
신용현 · 황주홍 · 김종희 · 유성엽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8. 7. 13. 윤종필 · 박덕흠 · 원유철 · 이명수 ·
최연혜 · 성일중 · 임이자 · 김석기 · 김경진 ·
신보라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7. 13. 심재권 · 심기준 · 전현희 · 송옥주 ·
조정식 · 김병기 · 신창현 · 한정애 · 김영호 ·
설훈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6. 박광은 · 송갑석 · 김해영 · 전현희 ·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
이춘석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광은 · 송갑석 · 김해영 · 전현희 ·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
이춘석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63건 7월 17일 회부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6. 9. 28. 박덕흠·김종태·이철규·윤영석·이군현·박맹우·장석춘·이철우·이은권·곽대훈·홍철호·강석호·이우현·주승용·송기현·강석진 의원 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6. 11. 30. 이철우·김정재·이석기·곽대훈·김종태·박인숙·윤재욱·이종명·박순자·이혜훈·김규환 의원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9. 박완주·이동섭·김상희·김철민·김정우·정인화·김영호·전혜숙·박남춘·윤관석·신창현·안규백·노웅래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7. 8. 17. 김경수·윤관석·김태년·최인호·안호영·김현권·서형수·김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11. 30. 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강훈식·안호영·임종성·조승래·윤후덕·박영선·강병원·양승조·백재현·조정식 의원 발의)

물산업육성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8. 1. 23. 송석준·윤상직·김선동·金成泰·이종명·김순례·김종석·이군현·정진석·권석창·장제원·박순자·이만희 의원 발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8. 3. 12. 강훈식·김종희·정춘숙·기동민·안호영·김철민·윤후덕·임종성·최인호·민홍철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8. 4. 18. 강훈식·임종성·노웅래·안호영·윤후덕·안규백·남인순·송옥주·김영진·강병원 의원 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8. 4. 19. 이종배·이채익·강효상·박인숙·박순자·권석창·박덕흠·신보라·이은재·김무성 의원 발의)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18. 5. 31. 정부 제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안민석·김병기·노웅래·손혜원·유은혜·송갑석·김철민·강창일·서삼석·고용진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안민석·노웅래·손혜원·유은혜·송갑석·김병기·김철민·강창일·서삼석·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14건 2018년 7월 18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한정애·권미혁·조정식·신경민·신창현·진선미·고용진·김병기·유승희·송옥주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한정애·김병기·신경민·진선미·김성수·윤후덕·심재권·고용진·유승희·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9일 회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이찬열·황주홍·이동섭·김수민·

유성엽 · 위성곤 · 윤후덕 · 채이배 · 권칠승 · 조배숙 의원 발의)

7월 20일 회부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0. 제윤경 · 소병훈 · 윤후덕 · 김경협 · 이춘석 · 유동수 · 손혜원 · 심기준 · 민홍철 · 김영호 · 오제세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0. 김선동 · 김규환 · 정갑윤 · 민경욱 · 이종명 · 경대수 · 추경호 · 나경원 · 이만희 · 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8. 5. 24. 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희 · 김종대 · 조배숙 · 김광수 · 장정숙 의원 발의)

5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8. 5. 30. 이진복 · 김무성 · 주호영 · 윤한홍 · 김세연 · 장제원 · 송희경 · 박인숙 · 이현승 · 김도읍 · 김성원 · 유기준 · 유재중 · 엄용수 · 신보라 · 김정훈 · 강창일 · 이주영 의원 발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2018. 6. 12. 정부 제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8. 6. 15. 김학용 · 김영우 · 홍철호 · 이종명 · 안상수 · 이현재 · 송석준 · 한선교 · 홍문종 · 김성원 의원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8. 7. 11. 성일종 · 신상진 · 박완수 · 송희경 · 김규환 · 주호영 · 민경욱 · 이용호 · 김성원 · 김성찬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광온 · 송갑석 · 김해영 · 전현희 ·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 이춘석 의원 발의)

7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9. 정동영 · 유성엽 · 이찬열 · 김종희 · 장정숙 · 김중로 · 박주현 · 황주홍 · 김광수 · 주승용 의원 발의)

7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